

# 재난 이후 회복력 제고를 위한 심리지원 방안 연구

## 재난 이후 회복력 제고를 위한 심리지원 방안 연구

A Study on Psychological Support for Resilience  
After Disaster

2018. 12.

연구책임자 : 최 남 희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 배 정 이 인제대학교 교수  
유 정 서경대학교 교수  
조 민 상 백석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 오 혜 성 순천향대학교 박사과정

재난안전연구소

# 요약문

## I. 연구제목

재난 이후 회복력 제고를 위한 심리지원 방안 연구

## II.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재난 피해자와 피해 지역 공동체가 재난 이전의 일상적 삶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간중심의 재난 심리지원방안을 마련하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지원 모델을 개발
  - 재난피해자들의 사회심리적 요구 및 심리지원의 실재를 파악하여 심리지원 매뉴얼의 지침을 제시하고 심리지원 체계의 방향성 제시

## III. 연구내용

- 회복탄력성 개념의 이해와 현대 재난 대응의 변화 파악
  - 인간과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의 개념 정의
  - 현대 재난 대응의 문제와 변화의 방향성 검토
  - 국내외의 재난 심리지원과 지역사회 공동체 역량강화 방안제시

- 국내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요구 조사
  - 재난피해자의 재난 이후 삶에 대한 실태조사
  - 재난피해자의 재난 이후 심리, 정서 변화 분석
  -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니즈 파악
  - 재난과 재난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조사
- 재난 피해자 지원의 현황 조사
  - 재해구호물자 지원 현황
  - 구호물품 kit의 해외사례 분석
  - 구호물품과 구호활동가의 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검토
- 재난심리지원의 매뉴얼 및 체계 파악 및 발전방향 제시
  -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매뉴얼의 구성 및 운용 현황
  - 대상자 및 재난 유형별 심리지원 지침
  - 재난심리지원 회복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

## IV. 주요 연구성과

-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요구에 따른 심리지원의 방향성 제시
- 재난 피해자 지원의 개선과 구호활동가의 활동방향 제시
- 재난의 유형 및 대상별 심리지원 지침 제시
- 재난 피해자 대상 심리지원 체계의 발전방향 제시

# 차 례

##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	3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3.1 연구범위와 내용	4
1.3.2 연구방법과 절차	6

## 제 2 장 현대 재난 대응의 변화

2.1 재난의 사회적, 심리적 문제	10
2.1.1 재난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변화	12
2.1.2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18
2.2 국내·외 재난심리지원의 방향성	19
2.2.1 국내	20
2.2.2 일본	22
2.3 지역사회 공동체 역량강화	30

## 제 3 장 국내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요구 조사

3.1 심리적 니즈	37
3.1.1 피해자의 심리적 니즈	37

3.2 사회적 인식	53
3.2.1 개인	54
3.2.2 가족	54
3.2.3 지역사회와 주민	56
3.2.4 자연재난	57
3.2.5 인적재난	65

## 제 4 장 재난 피해자 자원의 실제

4.1 물적 지원: 구호물품 kit	69
4.1.1 재해구호물자의 종류와 기준	69
4.1.2 재해구호물자의 실측 및 분석	71
4.2 구호물품 kit의 해외사례	81
4.2.1 미국 사례	82
4.2.2 일본 사례	87
4.2.3 기타 사례: 디자인적 측면	90
4.3 구호물품에 대한 전문가 의견	98
4.3.1 구호물품의 지원품목과 개인구비품목	99
4.3.2 대피소 내 구호물품	113
4.3.3 활동가의 태도	117

<b>제 5 장 심리지원의 실무 매뉴얼 작성 지침</b>	<b>125</b>
5.1 매뉴얼 구성 및 운용	125
5.1.1 목적	125
5.1.2 구성 및 운용	125
5.1.3 우리나라 재난심리지원 체계	127
5.1.4 재난심리지원 단계별 매뉴얼	131
5.2 대상자별 심리지원 지침	136
5.2.1 어린이	136
5.2.2 노인	138
5.3 재난 유형별 심리지원 지침	140
5.3.1 교통사고	140
5.3.2 화재	143
5.4 재난심리지원 회복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	144
5.4.1 관계 부처와 기관의 다양화로 일관성 있는 지휘 체계 확보의 어려움	144
5.4.2 재난심리지원 제공자의 전문성에 대한 상호 이해 및 합의 부재에 따른 협업의 어려움	145
5.4.3 재난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146
<b>제 6 장 결론 및 제언</b>	<b>147</b>

<b>참고문헌</b>	<b>151</b>
<b>그림차례</b>	<b>v</b>
<b>표차례</b>	<b>vi</b>

## 그림 차례

그림 2.1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체계	21
그림 3.1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심리상태 평균	39
그림 4.1	멀티박스	78
그림 4.2	Shelter by Buckminster Fuller, USA	91
그림 4.3	Shelter by Shigeru Ban, Japan	92
그림 4.4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과 개인구비 여부: level 1	100
그림 4.5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과 개인구비 여부: level 2	102
그림 4.6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과 개인구비 여부: level 3	104
그림 4.7	지원 및 개인구비 물품으로 60% 이상 선택한 구호물품 목록	106
그림 4.8	각 level 별 지원물품, 개인구비물품, 필수물품으로 선택한 비율	108
그림 4.9	대피소에 비치되어야 할 구호물품 제안	115
그림 4.10	대피소의 공간배치 의견	116
그림 5.1	재난심리지원 체계도	126
그림 5.2	대규모 재난현장 심리회복지원 활동 체계	130
그림 5.3	재난심리지원 단계별 매뉴얼	131

## 표 차례

표 2.1	재난에 대한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	12
표 2.2	재난에 대한 정신적 반응	14
표 2.3	재난에 대한 연령에 따른 반응	14
표 2.4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18
표 2.5	지역사회 동원의 주요 단계	32
표 2.6	지역사회 동원 및 지원의 주요 조치	33
표 2.7	지역사회 자조 및 사회적 지원 촉진의 주요 조치	34
표 2.8	지역사회 치유를 위한 주요 조치	35
표 2.9	지역사회 아동 및 보호자를 위한 주요 조치	36
표 3.1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심리상태 평균	38
표 3.2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성별에 따른 심리충격	40
표 3.3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연령에 따른 심리충격	41
표 3.4	기초조사 4개 지역의 가족수에 따른 심리충격	42
표 3.5	기초조사 4개 지역의 학력에 따른 심리충격	43
표 3.6	기초조사 4개 지역의 혼인상태에 따른 심리충격	44
표 3.7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주거형태에 따른 심리충격	46
표 3.8	기초조사 4개 지역의 경제수준에 따른 심리충격	47
표 3.9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주관적인 사회적 위치평가에 따른 심리충격 [재난 이전]	48

표 3.10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주관적인 사회적 위치평가에 따른 심리충격 [재난 이후]	49
표 3.11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재난 후 질병발생 유무에 따른 심리변화	50
표 3.12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재난 후 질병의 진행변화에 따른 심리변화	51
표 3.13 기초조사 4개 지역의 해당 재난 이전 재난에 대한 경험 유무에 따른 심리변화	52
표 4.1 응급구호세트(남자): 1명 기준	69
표 4.2 응급구호세트(여자): 1명 기준	70
표 4.3 취사구호세트(1세대 4명 기준)	70
표 4.4 응급구호세트 (남성)	72
표 4.5 응급구호세트 (여성)	74
표 4.6 취사구호세트	76
표 4.7 재난관리청 재난구호물품 배치 기준	80
표 4.8 미국 개인별 지급 구호물품	81
표 4.9 미국의 집단구호(mass care) 지원기관 업무	83
표 4.10 미국 내 정부민간단체의 판매용 구호물품	84
표 4.11 Items of Ready Campaign	86
표 4.12 주요 구호물품 kit 항목 - 교토도	88
표 4.13 상황별 ‘비상용 가방’ 품목 - 도쿄도	89
표 4.14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의류	93

표 4.15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식품	94
표 4.16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쉼터	95
표 4.17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기타	97
표 4.18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과 개인구비 여부: level 1	100
표 4.19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과 개인구비 여부: level 2	101
표 4.20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과 개인구비 여부: level 3	103
표 4.21 지원 및 개인구비 물품으로 60% 이상 선택한 구호물품 목록	105
표 4.22 각 level 별 지원물품, 개인구비물품, 필수물품으로 선택한 비율	107
표 4.23 각 물품에 대한 필수물품으로 선택한 비율의 순서	108
표 4.24 각 물품에 대한 지원물품으로 선택한 비율의 순서	110
표 4.25 각 물품에 대한 개인구비물품으로 선택한 비율의 순서	111
표 4.26 재난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주 하는 말	122
표 4.27 재난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주 하는 불평	123

# 제 1 장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회는 반복되는 대형 참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러한 사태를 지켜보는 일반 시민들의 사회적 안전에 대한 불안도가 높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악몽이 가시기 전에 2017년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와 잇따라 같은 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대형 참사는 생명의 손실과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을 비롯하여 목격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남겼다.

2018년 지구 전 지역은 재난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진, 태풍, 홍수, 이상 고온 등으로 많은 재난 피해를 냈을 뿐 아니라 인명 손상 또한 매우 심각하였다(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 2018).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평균('08-'17) 인명피해(사망·실종)는 15명, 재산피해는 3,486억원(2017년도 환산 가격기준임)에 달했고 2017년도에는 총 25회의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난피해는 1,873억원에 달했다(행정안전부, 2018).

이러한 지속적인 재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 및 재난 피해 생존자들이 향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과거 물질 보상 중심의 재난 관리 및 피해자 지원은 심각한 심리적 충격과 치유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사회병리현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간접 비용을 발생시킨다.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심리적 불안정은 사회 갈등의 촉발요인이 되고 장기화 시킨다. 특히 2014년 발생한 비극 세월호의 침몰사고는 피해자와 생존자 및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자칫 재난 충격은 곧 정신적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재난 심리는 정상인의 정상적 반응으로서 수용하고 대응하려는 전략과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 심리지원의 효율적 방안을 고려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심리지원 제공자의 일방적 시혜활동이 아닌 피해 당사자와 해당 지역 사회 공동체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회복을 위한 활동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람과 지역 공동체의 자기 회복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방안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 재난 피해자의 회복효과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생활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피해자의 자의적 인식과 정서적 안정감에 근거한 주관적인 판단이 회복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피해자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초기 응급 대응 및 장기적인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심리지원 원리와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향하는 재난 이후 희망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의 중요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희망 공동체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개념이다. 재난 피해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재난의 경험을 자기발전의 계기로 전환하는 외상후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피해자와 피해 지역 공동체가 재난 이전의 일상적 삶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간중심의 재난 심리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재난 피해자들을 도움을 받아야 할 피동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행동의 주체로 보고, 회복력과 탄력성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현대 재난 대응의 문제와 변화의 방향을 확인한다.
2. 인간과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파악하고 정의한다.
3. 재난피해자의 사회심리적 요구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인한다.
4. 우리나라 심리지원의 실체를 파악한다.
5. 심리지원 실무 매뉴얼의 지침을 제시한다.

##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3.1. 연구범위와 내용

#### 가. 회복탄력성 개념의 이해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해당 학문분과의 특성에 맞추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 위기관리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의미인 회복탄력성을 이해하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연구자들이 정의하고 있는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 구성하였다.

#### 나. 재난 경험 이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심리지원 모델 개발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한 회복탄력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모델을 개발한다. 심리지원은 기본적으로 재난 이전의 일상성을 찾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재난피해자의 회복탄력성이 발현되도록 돕는 심리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 다. 심리적 응급처치를 포함한 재난 시 심리지원 연구

재난 발생 당시에 응급하게 필요한 심리적 응급처리를 비롯하여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심리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팀의 심리지원 모델과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다양한 심리지원을 탐색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재난의 형식이 바뀌었으므로 재난관리 단계 또한 변화되어야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예방, 대응, 복구, 재활 및 복귀의 단계에 따라 심리 지원 사례와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현재 배포되는 재난피해자를 위한 심리지원 매뉴얼들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 라. 재난피해자들이 겪는 장기적인 영향

재난은 재난피해자들에게 단 한 번의 경험일지라도 평생 동안 각인되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적, 행동적, 인지적 변화를 관찰해야 장기적인 심리지원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재난피해자들의 변화뿐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변화까지도 관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로 재난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재난 이후의 변화를 찾아내고자 한다.

재난 당시의 연령에 따라 재난 자체를 이해하는 폭이 다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적이든 집단이든 영향을 받거나 취약한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어린이, 외국인, 여성, 노인, 장기질환자 등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난피해 이후의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또한 재난관리 전 단계에서 대상에 따라 심리지원의 요구에 차이를 보이는지도 관찰해야 한다.

### 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안

위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팀은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이다. 현재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1.3.2. 연구방법과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팀은 문헌고찰, 통계 분석,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분석, 선행심리지원 사례의 분석과 종합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고찰은 최근까지 발표된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연구보고서,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본 과제의 중심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고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재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심리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을 병행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학계에서 이미 검증된 심리 검사 도구와 함께 본 연구진이 개발하고 전문가들의 자문 검토를 거친 조사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보다 나은 재난심리지원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심리지원활동 및 사례를 비교 분석 검토하였다.

### 가. 문헌조사 연구

#### 1) 회복탄력성에 대한 용어정리를 위한 국내외의 문헌연구 조사

연구자 및 학문분과 마다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팀이 사용할 회복탄력성의 재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2) 심리지원에 대한 국내외의 문헌연구 조사

심리지원의 원리와 목적, 진행 실태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기별 심리지원의 경향성 파악을 하고, 재난

이후 정신보건 서비스를 비롯한 지원시스템 국내의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재난피해자들의 심리변화 연구

생존자와 유가족, 생존자의 가족 등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장기적 변화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재난피해자들의 변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 사회적 요구변화 연구를 실시하였고 트라우마 전문가들이 보고하는 재난피해자들의 삶의 변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 4) 재난과 재난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난과 재난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실태를 조사하였고, 국내외 재난피해자 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 5) 심리지원 프로그램 연구

국내외에서 보고한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연구 및 조사하였으며, 연령별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도구와 활용에 대한 조사와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 6) 심리지원 매뉴얼 연구

심리지원 매뉴얼에 대하여 해외의 심리지원 매뉴얼들에 대한 조사로 단계별,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였고, 각 매뉴얼의 장단점을 파악하였다.

## 나. 실태조사 :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

### 1) 재난피해자의 재난 이후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

재난 피해자의 재난 이후의 개인이 느끼는 삶의 변화, 가족이 느끼는 삶의 변화, 기관과 전문가가 느끼는 삶의 변화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재난피해자의 재난 이후의 심리, 정서 변화

재난피해자의 재난 이후의 심리, 정서적 변화로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심리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회 심리적 요구과악과 연령별(어린이, 성인, 노인), 대상별(장기질환자, 여성, 외국인 등)에 따른 심리, 정서 변화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 3) 잠재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니즈 파악

잠재적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니즈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고령자의 니즈(재난 이후에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요소)를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신속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 독거노인의 이동을 책임질 수 있는 청년과 연계할 방안 등을 모색 및 검토하였다. 둘째, 어린이의 니즈 파악은 어린이의 무서움에 대한 인식과 표현을 미리 알아두어 재난현장에서 보이는 어린이의 반응을 예견하도록 하였다. 셋째, 장기질환자 니즈 파악은 재난 발생 시, 위급한 상황에서 미리 갖추어두어야 할 약, 간병통로, 이동수단 등을 파악하였다.

### 4) 재난과 재난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난 및 재난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재난피해자 지원에 대한 태도, ‘재난피해자’ 라는

인식 등을 조사하였고, 둘째로 해외의 재난피해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외 재난피해자 지원제도를 분석하였다.

#### 다. 사례조사 연구

##### 1) 국내외의 심리지원 사례 연구

국내와 해외 주요국의 심리지원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재난에 따른 심리지원의 사례와 연령에 따른 심리지원 사례를 조사하였다.

##### 2) 국내외 심리지원 매뉴얼 분석

심리지원 매뉴얼의 분석을 위하여 국내외 심리지원 매뉴얼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의 심리지원 매뉴얼 배포 현황을 조사하였다.

## 제 2 장 현대 재난 대응의 변화

### 2.1 재난의 사회적·심리적 문제

재난이란 뜻밖의 불행한 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에서는 재난을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 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유엔재해기구(UNDP)·유엔지역개발센터(UNCRD)에 따르면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기본 조직과 정상 기능을 와해시키는 큰 규모의 사건으로서 그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극복할 수 없고, 생명과 재산, 사회 간접시설과 생활수단에 일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현상이다. 일상적으로 ‘재난’ 은 큰 불행이 광범위한 손해나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용어의 정의는 40여개 이상으로 다양하다. 의학, 심리학, 사회학 분야에서는 재난을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대처(극복) 능력을 넘어서는 심각한 파괴’ 로 정의한다. 한편, 재난의 정의는 사건 자체에 의해 내려질 수도 있고, 그 사건의 결과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도 있다. 보통 재난이라는 용어는 빠른 파괴적 변화(예: 열차사고)를 지칭하지만, 더 느리게 진행되고 더 오랫동안 영향력이 지속되는 재난(예: 홍수나 가뭄)도 재난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재난을 사망률, 피해를 입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 집·가족·이웃·지역사회로부터 파괴되고 이탈되는 규모, 재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가 파괴되거나 돌이킬 수 없이 손상을 입는 정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 규정한다. 재난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과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재난은 현재의 사회 구조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대처하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폐해로부터 야기된 많은 어려움은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위협하고, 사태를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 (2) 재난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이 점진적으로 재난의 충격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게 되며, 사람들은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심리적 역량을 키우고, 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과 능력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재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 (3) 재난의 개념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문화적 현상에 따라서 변천되어 왔다. 반복적인 가뭄이나 산불 등의 재해를 오랫동안 극복해 온 호주는 그 지역의 특징적 재난에 의한 하위문화를 창출해냈다. 이는 재난이 정신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적응 능력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반응 패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4)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서 비극적이고 참혹한 재난이 더 자주 발생하고 문제 상황을 야기하기 때문에 소외지역 재난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중요시해야 한다.

## 2.1.1 재난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변화

사회와 개인 모두는 재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재난 후에 생존자들은 감정적 어려움의 징후를 보이며, 이들 징후 중 대다수는 일시적이고 비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다. 회복력은 재난 후에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결과이다. 충격적인 사건의 결과는 항상 나쁘지만 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기도 한다. 재난은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기도 하고, 개인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기도 하는데, 이처럼 재난으로 인해 유발된 긍정적인 양상들을 ‘외상 후의 성장’ 이라고 한다.

### 가. 개인

재난의 정신심리학적 압박감은 생존자와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반응은 복잡한 감정, 생각, 행동 등으로 정의되는 일반적인 패턴에 따라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된다.

아래 표는 재난 후 개인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들이다. 여기에는 감정적인 영향과 신체적인 영향, 인지적 영향, 대인관계에서의 영향 등의 징후들이 포함된다.

충격, 놀람, 무기력, 혼란의 감정과 행동과 같은 재난 초기의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된다. 90% 이상의 성인이 재난에 노출된 후에 중요한 정신 건강의 혼란을 경험하지 않으며, 12~24개월 내로 심리적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소수의 생존자들은 스트레스성

반응이 지속되며, 인적재난 후에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 충격은 재난 후 오랫동안 지속되며,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을 일으키고, 행동의 변화와 신체적 변화를 가져온다.

**표 2.1 재난에 대한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

<b>감정적 영향</b>	
·충격	·테러
·노여움, 화	·성급함
·걱정, 공포	·감정적인 마비
·질망	·무력함, 자제력 상실
·슬픔	·무의미한 느낌
·죄의식 (살아남은 것에 대한)	·일상의 즐거움을 상실함
<b>신체적 영향</b>	
·피로	·두통
·불면증	·위장의 '문제'
·수면장애	·식욕저하
·극도의 흥분	·성욕 저하/상승
·신체의 병	·깜짝 놀라는 반응
<b>인지적 영향</b>	
·집중력 손상	·자존감 저하
·의사결정 능력 상실	·사고력 저하
·기억 장애	·자기 비난
·불신	·생각과 기억의 방해
·혼란	·걱정
·시간 감각의 왜곡	·의식분열 (꿈을 꾸는 듯 하거나 멍한 상태)
<b>대인관계의 영향</b>	
·소외감	·근무 능력 장애
·사회적 퇴출	·학업 장애
·갈등 증가	·사회적 행동 저하

재난 반응 연구의 주안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인식이다. 그러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유일한 재난 반응은 아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약물 남용, 불안 장애, 조절 장애 등이 재난 후에 따르는 징후들이며, 심리적 상해나 질병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도 중요한 재난 후의 반응에 포함된다.

**표 2.2 재난에 대한 정신적 반응**

·심한 스트레스 장애	·사별의 혼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정 폭력
·우울함	·어린이나 배우자 학대
·개괄적인 불안 장애	·머리 부상, 독성 물질 노출, 전염병, 탈수증에 의한 신체 기관의 장애
·약물 남용	·신체적 질병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요소
·조절 장애	

**나. 연령에 따른 반응**

재난 반응은 다음과 같이 행동, 신체, 감정 등에 있어 연령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표 2.3 재난에 대한 연령에 따른 반응**

1세 ~ 5세	
<b>행동 증상</b>	<b>감정 증상</b>
·야뇨증, 엄지손가락 빠는 버릇, 부모에게 의존하는 버릇 재발	·걱정
·어둠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
·혼자 자는 걸 피함	·성급함
	·분노 폭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잦은 울음</li> </ul> <b>신체 증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욕 저하</li> <li>· 복통</li> <li>· 메스꺼움</li> <li>· 수면 장애, 악몽</li> <li>· 언어 장애</li> <li>· 틱 증후군 Tic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픔</li> <li>· 허탈감</li> </ul>
--	---

6세 ~ 11세	
<b>행동 증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 성적이 떨어짐</li> <li>· 집과 학교에서 공격적인 행동 보임</li> <li>·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바보 같은 행동을 함</li> <li>· 우는 소리를 하거나 매달리거나 어린 아이처럼 행동함</li> <li>· 부모의 관심에 대한 어린 형제와의 경쟁심 증가</li> </ul>	<b>신체 증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욕 변화</li> <li>· 두통</li> <li>· 복통</li> <li>· 수면 장애와 악몽</li> </ul> <b>감정 증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기피</li> <li>· 친구와 친숙한 활동에서 회피</li> <li>· 분노 폭발</li> <li>· 재난과 안전에 강박적으로 몰두</li> </ul>

12세 ~ 18세	
<b>행동 증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 성적이 떨어짐</li> <li>· 집과 학교에서의 반항</li> <li>· 이전의 책임감 있는 행동 쇠퇴</li> <li>· 흥분, 에너지 수준 및 감정의 감소</li> <li>· 직무태만 행위</li> <li>· 사회적 퇴행</li> </ul> <b>감정 증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래 사회 활동, 취미,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 상실</li> <li>· 슬픔과 우울증</li> <li>· 권위에 저항</li> <li>· 무력감</li> </ul>	<b>신체 증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욕 변화</li> <li>· 두통</li> <li>· 위장 장애</li> <li>· 피부 발진</li> <li>· 경미한 통증과 고통 호소</li> <li>· 수면 장애</li> </ul>

성인	
<b>행동 증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면 장애</li> <li>·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피함</li> <li>· 지나친 활동 수준</li> <li>· 쉽게 눈물을 보임</li> <li>· 가족과의 갈등 증가</li> <li>· 두려움 증가</li> <li>· 고립, 퇴화</li> </ul> <b>신체 증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로, 기진맥진</li> <li>· 위장 장애</li> <li>· 식욕 변화</li> <li>· 신체 불평</li> <li>· 만성 건강상태의 악화</li> </ul>	<b>감정 증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울증, 슬픔</li> <li>· 화를 잘 냄, 분노</li> <li>· 걱정, 두려움</li> <li>· 절망, 자포자기</li> <li>· 죄를 지음, 자기 회의</li> <li>· 기분의 두드러진 변화(조울증)</li> </ul>

노인	
<b>행동 증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화와 고립</li> <li>· 집에 남겨지는 걸 꺼림</li> <li>· 운동성 제한</li> <li>· 적음 문제</li> <li>·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해 나타나는 증상</li> </ul> <b>신체 증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 건강상태 악화</li> <li>· 수면 장애</li> <li>· 기억 장애</li> <li>· 저·고체온증에 더 쉽게 영향을 받음</li> <li>· 신체적, 감각의 제한, 회복 장애</li> <li>·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해 나타나는 증상</li> </ul>	<b>감정 증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울증</li> <li>· 손실에 대한 절망</li> <li>· 무감정</li> <li>· 혼란, 흥미</li> <li>· 의심</li> <li>· 흥분, 분노</li> <li>· 익숙치 않은 환경에 대한 걱정</li> <li>· 구호품을 받는 것에 대한 당혹감</li> </ul>

### 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ASD, Acute Stress Disorder)

외상 후 장애 직후에는 대개 구체적인 스트레스 징후가 발생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측할 수 있다. 급성 스트레

스 장애는 개념적으로 PTSD와 유사하며 비슷한 징후들이 나타난다. 재난 발생 후 나타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ASD)에 대한 연구를 보면 ASD가 더 나쁜 결과를 유발하며, PTSD 이후에 나타난다. 따라서 ASD의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재난 후에 발생하는 일반적 반응은 아니며, 대부분은 형식적인 개입 없이 회복될 수 있다. PTSD의 징후가 나타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몇 개월 후 회복이 가능하다. PTSD는 재난 후에 가장 일반적으로 연구된 진단 방법일 것이다. 외상 후 최소한 한 달 가량 증상이 나타나야 하며, 사건 직후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연기 될 수도 있다. 침윤적 기억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증상이며, 과장되게 깜짝 놀라는 반응이 뒤따른다. 심한 PTSD를 동반하는 극도의 자극 반응은 즉각적이거나 몇 시간 안으로 나타난다.

**표 2.4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재경험	회피	과각성
·충격, 놀람	·집중력 저하	·극도의 흥분
·위축, 감정적 마비,	·의사결정 능력 손상	·피로
·걱정, 공포, 절망감	·시간 감각의 왜곡	·수면장애
·성급함	·출란	·두통
·자제력 상실	·기억장애	·식욕 저하
·노여움, 화	·멍한 상태	·소화기능 장애
·살아있다는 죄의식	·자존감 저하	·성욕의 변화
·슬픔, 무력감, 소외감	·자기 비난	
·무의미한 느낌	·업무나 학업 능력 저하	
·즐거움의 상실		

PTSD 진행 과정에서는 습관적이고 자학적인 행동, 정신 이상적 파괴, 심한 자기 회의, 심한 공포와 과대망상, 과도한 복종, 친교의 공포, 우울증, 무기력함과 절망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은 충격의 재경험, 극도로 흥분된 상태가 지속되는 과각성, 꿈과 현실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해리, 기억 장애가 나타나는 회피 등이 대표적이다.

**마 우울 (depression)**

죽음과 상실 경험의 외상성 본질은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재난 후 일주일 내의 높은 수준의 강요와 회피,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 사회적 지원을 적게 받은 사람, 가장 오래된 공동체의 일원, 우울 증세가 더 심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전의 우울함과 상처 받은 경험은 더 큰 위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2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손실이 나타난다.

- 재난 피해 후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의료비의 상승
- 직접적인 의료비 외에도 상담과 치료를 위하여 병원이나 상담소를 방문하는 시간적 손실로 인한 간접비용의 발생
- 개인의 결근, 사회생활 기피, 생산성 및 삶의 질 저하 등 간접적 손실
- 실직으로 인한 간접 손실
- 사업 중단으로 인한 간접 손실

- 개인이 속한 가족과 친구, 직장 및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로 인한 생산성 저하
- 자살 등 조기 사망으로 인한 인구 손실
- 생존자와 유가족, 목격자, 구조대원 등에 이르기까지 재난충격 후유증이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확대
- 가족 해체로 인한 사회간접비용 발생
- 재난피해자 및 잠재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신 조장
- 노인, 빈곤층, 실업자, 농·어민 등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이 자원배분, 조직방식, 정보에의 접근성 등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갈등 초래
-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사회·심리적 병리현상으로 확산되며 이에 따라 사회 간접비용이 발생
- 심리적 지원 대상자 급증으로 인하여 관계 부서와 직원 및 지원자, 상담자의 피로 누적

## 2.2 국내·외 재난심리지원의 방향성

지진, 해일 등의 재해 및 태풍 등에 의한 풍수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지역에서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에 의한 재해 지원 활동은 큰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지역 커뮤니티의 복구와 재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 자원봉사활동에 큰 기대가 모아지는 한편, 자원봉사활동이 피해 지역의 주민과 재해 지원활동 유관기관에 부담이나 폐가 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 각자가 자신의 행동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재난현장 활동가의 피해 지 지원활동에서의 마음가짐, 태도 등에 대한 유의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2.1 국내

현재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행정안전부, 2018)에 따라 재난 발생 초기 재난경험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회복지원이 마련되어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이란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재난 발생시 재난 경험자와 초기 신뢰 형성을 바탕으로 심리상담 활동을 통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현장 중심의 새로운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대한적십자사, 대학,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으로 구성되어 이는 개인 중심적이고 비전담 조직으로의 운영으로 시·도별로 센터 운영주체가 다양하여 지역별로 역량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현행 시스템의 구축은 법정 구호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로 운영 주체가 일원화되어 재난 발생 초기에 구호활동과 심리회복지원활동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는 기관 중심, 전담 조직화가 가능하도록 변화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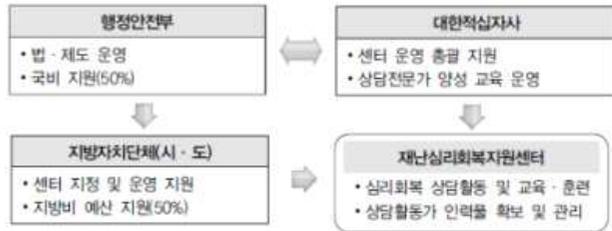


그림 2.1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체계<sup>1)</sup>

재난심리회복지원은 재난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확산되어 방치할 경우 심리적 병리현상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에서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 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이다. 재난의 유형, 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당사자 또는 유관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재난심리회복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여 기본적인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운영은 시·도 단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통한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가 담당한다.

대피소의 운영의 예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넉넉한 가족 단위 독립 공간 마련, 전국재해구호협회 보유 대피소 칸막이, 대한적십자사 보유 이동형 쉼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

1) 자료: 2018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행정안전부

이다. 심리회복지원으로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실시, 이재민의 사소한 부분까지 공유할 수 있는 라포 형성(Rapport building)을 위한 활동이 있다. 또한 심리적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불편사항에 대한 포괄적 상담 실시, 2차 피해 증상 발견시 의료기관 조기 치료를 연계 지원한다. 대피생활 장기화시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과의 연계 활동도 지원한다.

## 2.2.2 일본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해 자원봉사자 마음가짐 및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유의사항/매뉴얼 등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자급자족의 원칙
- (2) 상황 파악 및 연락 및 연계
- (3) 피해자의 의사 존중
- (4) 약속 및 프라이버시 보호
- (5) 무리하지 않는 활동
- (6) 건강관리
- (7) 보험 가입

### 가.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재난봉사활동 시의 유의사항

사회복지법인 전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에 따라 각 시정촌, 도도부현, 지정도시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의 전국 중앙 조직으로 각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 서비스 이용자 및 사회복지관계자와 연락 조정, 활동 지원, 제도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지원을 시정촌 단위의 조직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는 평소에도 자원봉사나 시민활동의 추진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특히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지역의 재해자원봉사센터를 개설 및 운영하여 자원봉사자의 접수 및 조정, 업무 매칭, 피해지역의 지원과 니즈 파악 및 정리, 행정에 대한 지원 요청 등 초기의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서는 전국에 약 200개의 재해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였고 약150만 명의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생활지원상담원 파견을 통한 생활지원, 상담활동 지원 및 지속적인 배치를 통해 실태 파악 및 과제, 개선방안에 관한 정리를 실시하였다. 재해 자원봉사센터를 개설 및 운영하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현장에 투입되는 재해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에게 재해 자원봉사 활동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있다.

#### 나. 재난 자원봉사 활동 유의사항 매뉴얼

전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의 재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은 매뉴얼<sup>2)</sup>을 통해 안내하였다.

2) 社会福祉協議会、災害時のボランティア活動の注意事項(全社協作成平成28年4月20日)  
[http://www.akitakenshakyō.or.jp/pcms/uploads\\_dir/editor/doc/volunteer/saigaiji%20volunteeractivity%20tyuuijiko.pdf](http://www.akitakenshakyō.or.jp/pcms/uploads_dir/editor/doc/volunteer/saigaiji%20volunteeractivity%20tyuuijiko.pdf)

재해시 자원봉사 활동의 유의 사항 (전국사회복지협의회 작성 2016년 4월 20일)
<p>1. 재해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와 책임임에 피해 지역에서의 활동에 참여·행동하는 것이 기본입니다.</p> <p>2. 지진이 계속되고 있어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피해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여 현지에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의 이해도 중요하므로 재해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 일정, 연락처를 반드시 알려주십시오.</p> <p>3. 재해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반드시 현지에 설치되어있는 재해 자원봉사센터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재해 자원봉사센터의 연락처는 구마모토현<sup>3)</sup> 사회복지협의회, 구마모토시 사회복지협의회, 오이타현 사회복지협의회 및 전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4. 피해 지역에서 활동할 때, 교통수단의 확보 및 숙소(호텔 등, 차안 숙박, 텐트·침낭)는 자원봉사자 자신이 사전에 피해 지역의 상황을 확인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물, 음식, 기타 개인적인 준비품은 자원봉사자 자신이 준비하고 휴대하여 피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이에 대한 비용은 자원봉사자 자기 부담입니다.</p> <p>5. 재해지역에서의 활동은 피해 시정촌<sup>4)</sup>의 상황이나 라이프라인(전기, 수도, 가스, 도로 등)의 피해 상황, 지리적 환경과 기후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활동에 필요한 작업복(긴 소매, 긴 바지), 목장갑·가죽 장갑, 안전화(못 등 부상 방지), 우비(비옷 등), 방한복(손난로), 방진 마스크, 모자·헬멧, 실내용 신발, 수건, 휴대전화 등 자원봉사자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p> <p>6. 또한 피해 지역에서의 활동은 예측할 수없는 돌발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활동은 컨디션을 악화시킬 수</p>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에 대해 자원봉사자 자신이 관리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참여하십시오. 컨디션이 나쁘면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피해 지역에 도착한 후에는 반드시 재해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 등록(신분증)을 해야 합니다(고교생 이하의 참여는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피해 지역의 현과 시정촌 재해 자원봉사센터, 병원, 소방·경찰 등의 긴급 연락처·연락망을 반드시 확인하고, 활동 내용을 확인, 지리와 기후 등 주변 환경을 파악한 상태에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9. 피해 지역에서는 피해를 입은 분들의 마음과 개인 정보 보호에 충분히 배려하고 매너있는 행동과 말투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10. 재해지에서는 반드시 재해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등 현지 수용 기관의 지시에 따라 활동합니다. 단독 행동은 피하십시오.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11.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활동을 수행하십시오. 휴식에 유의합니다. 무리한 활동은 뜻밖의 사고로 이어져 오히려 피해 지역 사람들의 부담이 되어 버립니다.

12. 사전 준비로 지진으로 인한 사고나 부상을 보장하는 「천재 유형의 자원봉사자활동 보험」에 가입합니다. 최대한 출발지에서 가입을 하여 재해지에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 다. 방재 자원봉사활동 매뉴얼 내의 방재자원봉사 활동 태도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재해 발생 직후부터 대피소나 이주민 주택, 구호물자 집적소, 방재 자원봉사자의 수용거점 등 다양

3) 현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도에 해당한다.

4) 우리나라의 선출직 수장을 갖는 시군구에 해당한다.

한 장소에서 다양한 니즈가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 및 그룹이 자주적으로 각각의 장소에서 개별적인 니즈에 대응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참여가 예상된다.

홋카이도에서는 1999년 3월에 방재 자원봉사활동 매뉴얼을 책정하였고 2018년 4월에 최종 갱신하였다. 본 방재 자원봉사활동 매뉴얼은 1) 방재자원봉사의 활동내용과 2) 방재자원봉사활동의 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홋카이도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며 일반적인 시민도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일본 내의 다른 지자체도 대동소이한 내용의 방재 자원봉사활동 매뉴얼을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고 있다.

#### 1) 방재 자원봉사활동의 활동상의 유의점

방재 자원봉사활동 매뉴얼 내의 마음가짐 및 활동, 커뮤니케이션상의 유의점 중, 전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작성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설명한다.

#### 방재 자원봉사 활동의 마음가짐(활동상 태도)

(최종갱신: 2018년 4월 5일)

##### 1. 피해 지역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을 배려

가족이나 친척을 잃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넘치는 의욕이 상처를 주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 2. 안전상의 배려

가구 반출 등, 위험한 활동도 있습니다. 무리가 될 때에는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 3. “뭔가 할까요?” 보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분을 알고 계십니까?”

상대의 자존심 및 노력하려는 의지를 응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

리하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원봉사자 돈으로 사서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구매 대행까지!**

“○○을 사주세요” 라는 요청은 “구매 대행”의 의미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돈으로 사서는 안 됩니다.

**5. 언론에 대한 대응**

취재를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해지 주민분들이 참여하는 취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6. “지원 요청”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 스텝에게 보고하고 인계를 합니다.

**7. “개인물품”은 항상 몸에**

개인물품은 재해 자원봉사센터에 맡길 수 없습니다. 항상 자신이 휴대하도록 합니다.

**8. “도둑”으로 오인되어 경찰에 임의질문을 받았을 때**

완장과 명찰 제시 또는 재해 자원봉사센터에 전화해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9. 집에 갈 때까지가 “자원 봉사자”**

자원봉사활동을 마친 자원봉사자가 관광객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과 대중교통 속에 피해 지역의 주민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 재해 자원봉사활동 시의 스트레스**

재해 현장에서는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재난 지원활동을 하는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도 피해 상황을 눈앞에 보고, 피해자의 체험담을 듣는 것만으로도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일본 적십

자사<sup>5)</sup>, 동경도 복지보건국<sup>6)</sup> 등이 제공하는 스트레스 체크 시트와 스트레스 대처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체크 시트**

활동 중 및 활동 종료 후에 체크해 보세요.

- 현장의 광경이 갑자기 눈에 선하다
- 눈물이 자주난다.
- 수면 리듬이 깨진다.
- 흥분 및 계속 긴장하고 있다.
- 악몽을 본다. 도중에 깨어난다.
- 짜증나고 신경질적으로 된다.
- 식욕 부진, 위 상태가 좋지 않다.
- 자신이 위대한 것처럼 생각된다.
- 나른함, 강한 피로감이 몰려온다.
- 동료와 리더를 신뢰할 수 없다.
- 우울해지고, 기분이 다운된다.
-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진다.
- 강한 무력감과 억울함을 느낀다.
-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아진다.
- 강한 죄책감과 자책감을 느낀다.
- 휴식을 취하는 것에 위축과 미안함을 느낀다.

5) 日本赤十字社, “災害時のこころのケア”, 2004年

6) 東京都福祉保健局, “災害時の「こころのケア」の手引き”, 2008年

### 스트레스 대처법

- 1) 활동에 있어서는 겸손하게 자신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도록 한다.
- 2) 스트레스의 징후가 나타나면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 3)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한다.
- 4) 식사와 휴식을 자주 취한다. 술과 담배는 삼가한다.
- 5) 주위의 제약과 자신의 한계를 알고 무리를 하지 않는다.
- 6) 혼자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않고 동료와 얘기해 가면서 협력하여 활동한다.
- 7) 때때로 업무에서 벗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기분전환을 한다.
- 8)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한다.
- 9)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성장을 칭찬한다.
- 10) 이러한 해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리더나 책임자에게 반드시 상담한다.

#### **마. 일본사례에서 보는 활동 유의사항에 대한 시사점**

거대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지역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재난지원 활동가 및 자원봉사자들이 집결한다. 그러나 지원활동을 위해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모든 자원이 제약되고 한정적인 피해 지역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일이다. 방재 현장 투입 인원은 피해 지역의 정보 수집과 소지품의 준비 등 피해 지역에 부담을 주지 않는 준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가해야 한다. 또한 구조 등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재난 자원봉사활동 인원은 스스로 위험

한 지역에서의 활동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지원 활동에 있어서 그 중심은 피해지의 주민이고 방재자원봉사 활동 인원은 피해자를 서포트하는 존재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이다. 피해 지역의 환경과 피해자의 입장은 천차만별이다. 배려심 없이 내뱉는 조심성 없는 발언, 자신의 경험에 의한 판단을 강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을 배려하는 지원 활동이 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진, 태풍 등의 거대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는 방재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기완결이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부터 조금씩 정립되어 지금은 상식화가 되었지만 피해지역 내의 활동 중 자기관리에 있어서는 아직도 무리하는 부분이 많아 2018년 여름 서일본 수해 때에는 토사로 인한 호흡기관 및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 등 자원봉사자의 건강관리가 문제가 되었다. 활동 중 심신의 건강상태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하지 않고 조기에 활동을 종료할 수 있는 용기도 중요하다. 특히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대처에 있어서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2차적인 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2.3 지역사회 공동체 역량 강화**

회복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힘이다. 인간은 인생의 역경을 얼마든

지 이겨낼 잠재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힘을 회복탄력성이라 말한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을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마음의 근력과 같다. 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회복탄력성의 크기는 천차만별이며 체계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이를 강화시킬 수 있다(김주환, 2011). 재난의 경우 체계적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삶의 터전과 의욕을 파괴시키는 요인으로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기 까지 많은 어려움이 야기된다. 따라서 피해당사자의 자구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주위의 도움으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IASC)에서는 재난 대응시 모든 부문에서 지역사회 동원과 책임의식 및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활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최소 대응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동원 및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험이 있는 긴급 상황 및 재난에 대한 대응은 현지 정부의 지원구조를 활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원을 어떻게 활용하여 신속한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력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그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회의 '동원'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지역사회 내부 및 외부에서 지역사회 구성원과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토론·의사결정·행동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자하는 노력을 말한다. 집단, 가족, 친척, 동료, 이웃 등의 참여가 강해질수록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이 더욱 커

지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단계에서 구호 및 지원활동은 참여를 지지하게 되고, 피해 당사자들은 기존의 자조 노력을 지속하게 된다.

표 2.5 지역사회 동원의 주요 단계)

단계	내용
지역사회 구성원은 공통적인 우려 사항이 있고, 함께 노력할 경우 보다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인식을 통해 책임감과 책임 의식 고양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의식 형성
내부 지역사회 자원과 지식, 개별 기술·재능의 파악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이미 하고 있는가? 소유한 자원은 무엇인가? 부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선순위 사안에 대한 파악	우선적으로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내부자원을 이용하여 활동 계획·관리	가용한 자원 및 활동은 무엇인가?
행동의 효과성 유지·강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 제고

재난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니즈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경쟁하는 다수의 하위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 진정성 있는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지원에 대한 분쟁 양식의 이해

7) 자료: Donahue and Williamson (1999), Community Mobilization to Mitigate the Impacts of HIV/AIDS, Displaced Children and Orphans Fund

가 필요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제공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난의 측면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나치게 다양한 하위 수준의 재난 지원활동을 지양하고, 구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수준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2.6 지역사회 동원 및 지원의 주요 조치**

1. 지역사회를 동원하기 위한 노력의 조정
2. 정치적·사회적·안보 환경에 대한 초기 실행
3. 다양한 주요 정보원, 공식·비공식 단체와의 대화
4. 소외 계층의 참여 독려
5. 안전하고 충분한 공간의 조기 확보 및 계획 수립에 대한 토론, 정보 보급 지원 채널 마련
6. 지역사회 동원 과정 촉진

둘째, 지역사회 자조 및 사회적 지원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지역사회는 재난에 있어서 심리적·사회적 지원 및 대응과 회복을 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집단은 어려울 때 심리·사회적 지원을 돕는 조력자가 있다.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역사회의 자조 정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식·비공식적 구조로 현장에서 즉각적인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이질감을 최소화하여 적합한 커뮤니티 대응 역량을 마련하게 된다. 이때 외부 지원 기관들의 역할은 직접적인 활동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역량을 지원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표 2.7 지역사회 자조 및 사회적 지원 촉진의 주요 조치**

1. 현지 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의 파악
2. 참여형 방법을 통한 지역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행동을 파악하는 과정 촉진
3. 재난 피해자를 위한 가족·지역사회 지원 증진 계획을 지원
4. 지역사회 자체의 실행 계획 지원 외의 부가적 활동 독려·지원
5. 필요시, 단기적인 참여형 교육 세션 및 후속 지원 제공
  - 현지 지원 체계가 특정 목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취약할 경우
6. 지역사회 내 취약집단과 소외집단을 대변하고 옹호

셋째, 지역사회 공동의 문화적·영적·종교적 치유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문화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외부 지원 기관은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개인적 증상 및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가족 또는 지역사회 측면에서의 고통과 관련한 접근도 필요하다. 사망자의 발견 및 실종, 미수습 등으로 인한 고통 및 이후 절차에 관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종교 및 문화적인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죽음에서 비롯된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생존자의 치유를 위한 의식적인 접근은 회복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치유의 접근을 고려하지 못할 경우 재난에 대한 고통을 장기화하고 잠재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종교인 및

관련 활동가의 협력은 재난의 심리적·사회적 지원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8 지역사회 치유를 위한 주요 조치**

1. 현지 문화적·종교적 지도자 및 안내자를 확보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접근 방식의 견해를 청취
2. 윤리적 민감성을 고려
3. 문화적·종교적·영적 지원 및 극복 메커니즘의 이해
4. 수집된 정보를 지원 기관 및 활동가들과 공유
5. 적합한 치유 활동 실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

넷째, 아동 및 보호자를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아동기(0-8세)는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 감정,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재난으로 인한 상실감, 가족 및 지인의 사망·부상은 정상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한 발달에 치명적이게 된다.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자 및 부모, 아동이 의료서비스의 부족, 불충분한 영양, 보호에 대한 위협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보호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경우 이들은 부정적인 경험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으며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성인이 된 그들이 유사한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반복하게 되어 지역 회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표 2.9 지역사회 아동 및 보호자를 위한 주요 조치**

1. 아동이 부모, 가족, 보호자와 함께 있도록 지원
  - 이산 방지 조치 필요
  - 부모와 아동의 재결합(아동과 부모의 분리 상황 시)
  - 대안적 보육 형태 제공
2. 신생아 보호를 위한 가족 및 보호자 교육 실시
  - 임신 및 수유 여성을 위한 보완적 식량 배급을 우선 순위로 설정
  - 모유 수유를 권장하되, 가능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지원
  - 아기 체온 유지, 목욕 연기 및 위생에 대한 상담
3. 놀이, 양육 돌봄 및 사회적 지원
  - 현지에 적합한 활동적 놀이, 자극 사회화를 위한 기회 제공
  - 안전한 공간에서 비공식적 부모 모임 활동 마련
4. 양육자에 대한 돌봄
  - 보호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고에 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도록 조언
  - 부모와 보호자들이 위기 시 아동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이해토록 교육 실시
  - 부모와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 재난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 및 해결 방안에 대한 교육

## 제 3 장 국내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요구조사

### 3.1 심리적 니즈

#### 3.1.1 피해자의 심리적 니즈

재난피해자 및 잠재피해자의 재난에 대한 심리적 니즈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 수는 봉화군 100명, 평창군 300명, 태안군 200명, 제주도 1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조사비용문제와 현지상황(이주, 응답 거부 등)에 따른 오류율 증가로 인해 샘플 수가 줄어들어 봉화군 72명, 평창군 341명, 태안군 175명, 제주도 100명을 조사하였다. 전문가와 조사원이 직접 재난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측면으로는 우울, 사건충격, 불안상태 등을 주로 조사하였고 사회경제적 측면으로는 일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직업상태, 고용상태, 주거상태, 자산상태, 소득과 지출상태, 재난피해액, 사회적 지위평가, 건강, 가족관계, 이웃관계, 이주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심리 상태 조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개 지역의 조사응답자 수는 495명이다. 합계를 할 때 의도적으로 결측치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합계 값이 문항마다 다를 수 있다. 비율이나 평균은 결측치를 제거한 합계에 의거해 산출한 것이다.

#### 가. 조사지역의 심리상태 평균

평균을 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과 대비해 사건충격지수가 높은 지역은 태안군과 봉화군으로서 평창군과 제주도에 비해 비교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오래되지 않은 곳이다. 우울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도와 태안군이다.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잦은 제주도나 삶의 터전이 붕괴되다시피 한 인적 재난지역인 태안군의 경우와 달리 일부 지역에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봉화군의 경우 우울 지수 평균이 보통에 가까웠다. 한편, 불안지수는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태안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난피해자들에게 대한 보상의 불확실성과 생활 터전의 붕괴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때문으로 추측된다. 재난이 발생한 지 비교적 오래되었고 자연재해를 겪은 평창군의 경우 사건충격지수, 우울지수, 불안지수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표. 3.1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심리상태 평균

구분		사건충격지수	우울지수	불안지수	사례 수
		평균	평균	평균	
지역	태안	41.2	17.6	18.6	175
	봉화	36.5	13.8	15.3	72
	평창	24.6	15.0	13.8	148
	제주	28.8	20.4	16.3	100
TOTAL		33.1	16.8	16.2	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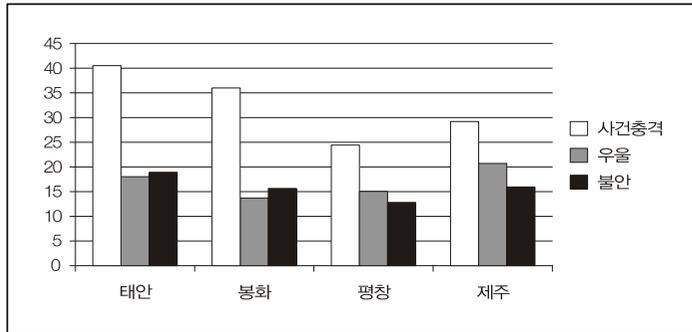


그림 3.1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심리상태 평균

#### 나. 성별/지역별 재난심리 상태

성별을 알 수 있는 응답자는 총 493명이다. 남성이 전체의 약 45.4%, 여성이 약 54.6%를 차지한다. 전체적인 평균을 보았을 때 사건충격지수, 우울지수, 불안지수 모두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다.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재난취약계층이라는 일반적 믿음과 상당부분 합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평창군의 경우 남성이 아주 조금 여성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는데 그 정확한 원인을 이번 조사에서 파악하기는 힘들다. 본 조사는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그에 부합한 설문지를 만들어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평창군의 경우 남성과 여성간의 사건충격지수(남 25.97 : 여 23.00)와 우울지수(남 49.66 : 여 50.34)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었다.

재난이 남녀 성별에 따라 심리상태에 어느 정도 다른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창군의 이번 결과가 지속적인 것인지 일회적인 것인지, 특별한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해야 할 것이다.

표 3.2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성별에 따른 심리충격

구분	N	비율	평균	
사건충격지수	남	224	45.44	31.26
	여	269	54.56	34.54
	합계	493	100	33.05
우울지수	남	224	45.44	15.21
	여	269	54.56	18.06
	합계	493	100	16.77
불안지수	남	224	45.44	14.25
	여	269	54.56	17.70
	합계	493	100	16.13

#### 다. 연령과 재난심리 상태

전체적으로 60세 이상~70세 미만, 70세 이상~80세 미만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건충격지수, 우울지수, 불안지수 모두 평균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노인이 재난취약계층이라는 일반적 주장과 합치하는 결과이다. 고령과 재난심리상태간에 어느 정도 일관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고령층이 ‘미래를 다시 설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단, 우울의 경우에는 20세 이상~3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도

18.59(약간 우울한 상태)라는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확대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울은 그 유발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해당 표본수가 22개 밖에 되지 않아 극단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만 가지고 재난지역의 20~30세 연령층에서 우울지수가 가장 높고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인 것처럼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지금은 우울지수가 높은 개별 사례를 따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별로 봤을 때 태안의 20~30세 연령층(22명 중 태안 거주자는 5명)이 다른 지역의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은 우울지수를 보였다. 이는 바다오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완전한 복구가 어렵고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아직도 존재하며 이후에도 삶의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3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연령에 따른 심리충격

구분	사건충격지수 평균(표준편차)	우울지수 평균(표준편차)	불안지수 평균(표준편차)	N
20세 미만	26.00(20.36)	11.00(10.30)	9.60(9.07)	5
20~30세	33.14(19.64)	18.59(12.52)	17.00(18.22)	22
30~40세	26.66(15.72)	14.69(8.19)	10.76(9.48)	29
40~50세	25.36(18.00)	15.99(8.84)	12.90(11.85)	77
50~60세	32.28(21.39)	17.54(10.16)	16.33(13.44)	98
60~70세	37.01(22.22)	16.70(10.79)	17.37(15.44)	126
70~80세	36.49(36.49)	17.78(10.63)	18.58(14.20)	119
80세 이상	32.18(23.94)	13.24(8.00)	15.18(13.93)	17
합계	33.06(21.13)	16.81(10.21)	16.20(14.05)	493

라. 가족수/학력과 재난심리 상태

가족수와 재난심리상태는 일관된 경향을 찾기 어려웠다. 가족수가 적은 경우(1명이나 2명) 대체로 가족수가 3명 이상인 응답자에 비해 우울지수와 불안지수가 좀 더 높았다. 혼자 사는 가구에서 재난충격지수, 우울지수, 불안지수가 평균보다 더 높긴 했으나 가족수가 많은 가구에서도 우울지수와 불안지수가 약간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가족수가 증가하거나 줄어들 때 어떤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볼 때 우울감은 혼자인 경우 더 많이 느끼지만 재난과 연관된 우울에 가족수 자체가 큰 변인으로 보이는 않았다.

표 3.4 기초조사 4개 지역의 가족수에 따른 심리충격

가족수	사건충격지수 평균(표준편차)	우울지수 평균(표준편차)	불안지수 평균(표준편차)	N
1명	36.24(23.23)	19.25(11.19)	18.76(15.38)	89
2명	33.36(20.54)	15.33(9.67)	15.30(13.33)	196
3명	31.12(20.00)	16.57(10.65)	16.07(13.68)	81
4명	31.40(20.43)	16.54(9.36)	15.06(13.93)	70
5명 이상	32.27(22.49)	19.33(9.60)	17.07(14.95)	55
합계	33.11(21.16)	16.87(10.17)	16.22(14.05)	491

학력 역시 재난심리상태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력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은 일부 계층에서 사건충격지수가 높은 사례도 있으나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무학이나 초졸이하의 저학력층에서 재난심리충격이 좀 더 큰 것은 분명하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재난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자원(특히 소득) 획득 기회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학력과 소득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표 3.5 기초조사 4개 지역의 학력에 따른 심리충격

구분	사건충격지수 평균(표준편차)	우울지수 평균(표준편차)	불안지수 평균(표준편차)	N
무학	38.63(22.93)	18.15(9.54)	18.95(14.23)	100
서당	19.00(30.35)	10.00(10.54)	16.67(17.56)	3
초등중퇴	29.79(19.03)	16.147(9.62)	16.12(13.96)	42
초졸	35.10(21.02)	15.65(11.02)	16.16(13.83)	138
중중퇴	46.11(30.21)	23.44(9.85)	21.78(18.03)	9
중졸	28.44(23.28)	14.98(9.92)	13.51(14.92)	45
고중퇴	32.15(21.15)	21.69(13.17)	17.23(18.25)	13
고졸	29.71(18.28)	17.57(10.19)	16.12(13.42)	92
전문중퇴	27.50(17.68)	4.00(4.24)	.50(.71)	2
전문졸	26.62(16.52)	19.33(8.46)	13.00(12.84)	21
4년제중퇴	42.00(-)	10.00(-)	6.00(-)	1
4년제졸	24.29(16.18)	14.10(7.50)	9.10(8.95)	21
대학원이상	44.33(27.54)	21.67(8.02)	25.33(20.98)	3
합계	32.98(21.21)	16.84(10.23)	16.14(14.08)	490

**마. 혼인상태와 재난심리**

재난직전과 직후 혼인관계의 빈도에 큰 변화는 없었다. 미혼이나 온전한 혼인 상태(동거)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혼, 사별의 상태에 있는 응답자들에게서 사건충격이나 우울지수 및 불안지수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부부나 부모의 심리적 지지를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혼자 남아 재난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심리적 지원책이 상대적으로 보다 강구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볼 때 동거와 다른 형태간에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일관된 차이는 없었다.

표 3.6 기초조사 4개 지역의 혼인상태에 따른 심리충격

구분	사건충격지수 평균(표준편차)	우울지수 평균(표준편차)	불안지수 평균(표준편차)	N
동거	32.35(20.07)	15.75(9.49)	15.21(13.13)	341
일시적 별거	42.27(19.82)	18.45(7.33)	21.00(14.71)	11
별거	10.00(2.00)	21.00(13.75)	16.67(24.54)	3
이혼	34.29(30.48)	23.14(9.56)	23.86(19.09)	7
사별	37.70(24.83)	19.48(12.07)	19.92(16.02)	89
미혼	27.33(18.26)	18.02(10.69)	13.10(13.79)	40
합계	33.02(21.17)	16.81(10.18)	16.16(14.06)	491

**바. 직업과 재난심리**

재난을 겪으면 구직회피자와 실업자가 증가한다. 이는 재난이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소득을 올리는 경제활동을 하는가 안(못)하고 있는 가는 재난심리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업자의 경우 재난충격, 우울지수, 불안지수가 모두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재난복구에 있어 구직지원을 비롯한 실업대책 같은 경제적 측면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평창군에서는 실업자와 무급종사자의 사건충격지수, 우울지수, 불안지수가 모두 임금근로자나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주장과 합치하는 결과이다.

만면 태안군에서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에게서도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태안군의 재난피해자들이 맨손어민이나 숙박업, 요식업 종사자들을 상당히 포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봉화군의 경우 재난피해자들이 고령층이 많고 소득 수준이 낮아서 인지 직업에 따라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사. 주택형태와 재난심리**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지수가 약간 더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태안군의 경우 오히려 응답자 대다수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주택 미소유자에 비해 불안지수가 더 높았다. 봉화군의 경우에는 주택소유 여부와 재난심리와는 별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반적인 주택 소유 형태보다 오히려 가옥이 파손되었을 경우의 적절한 거주 장소 확보여부가 재난심리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인다.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안정적인 주거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불만이 많은 편이었다. 이렇게 재난 복구과정에서의 거주 장소는 재난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재난대응에서 임시 주거장소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또한 피해지역을 재개발하거나 정비할 때 기존 거주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표 3.7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주거형태에 따른 심리총격**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사건총격지수	자가	376	33.84	21.23
	전세	35	34.37	21.07
	보증금있는월세	14	25.93	26.33
	보증금없는월세	12	31.58	15.94
	무상	31	25.65	16.54
	기타	14	28.43	17.88
	합계	482	32.90	20.96
우울지수	자가	376	16.49	10.24
	전세	35	18.91	10.08
	보증금있는월세	14	18.21	11.10
	보증금없는월세	12	22.17	10.48
	무상	31	16.35	8.60
	기타	14	15.21	9.73
	합계	482	16.81	10.16
불안지수	자가	376	16.05	14.05
	전세	35	19.91	15.18
	보증금있는월세	14	15.43	17.68
	보증금없는월세	12	17.75	12.01
	무상	31	13.71	11.75
	기타	14	13.43	11.02
	합계	482	16.13	13.98

**아. 총자산/총소득/총지출액/재난피해액과 재난심리**

재난을 겪은 사람은 어느 정도 총자산과 총소득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66명 중 재난 전에 비하여 빚이 8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한 사람, 빚이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으로 증가한 사람, 빚이 0원에서 4천만원 미만으로 바뀐 사람이 각각 7명, 7명, 18명이었다. 이와 함께 유자산수의 수가 줄고 부채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빚이 많은 사람의 경우(빚 8

천만원 이상) 재난충격이 좀 더 컸고 우울지수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총소득과 재난심리는 좀 더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총소득이 상당히 낮은 40만원 미만의 응답자들(22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0% 이상)이 평균에 비하여 사건충격지수, 우울지수, 불안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재난 전에 비해 재난 후에 4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93명에서 22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160만원 이상 소득자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다만 현 지출액과 재난심리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표 3.8 기초조사 4개 지역의 경제수준에 따른 심리충격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사건충격지수	100만원 미만	277	31.67	20.15
	100만~500만원 미만	79	40.71	24.64
	500만~1000만원 미만	29	35.41	19.02
	1000만원 이상	80	31.99	21.57
	합계	465	33.49	21.36
우울지수	100만원 미만	277	15.95	10.09
	100만~500만원 미만	79	19.95	10.84
	500만~1000만원 미만	29	16.45	9.93
	1000만원 이상	80	17.11	9.90
	합계	465	16.86	10.25
불안지수	100만원 미만	277	15.25	14.06
	100만~500만원 미만	79	20.10	14.69
	500만~1000만원 미만	29	15.31	13.51
	1000만원 이상	80	16.01	12.91
	합계	465	16.21	14.02

태안군의 경우 대체로 100만원 미만의 피해를 입은 사람보다는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사건충격지수, 우울지수, 불안지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태안군의 피해 범위가 전방위적이고 장기적이라 이들의 피해액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 자.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평가와 재난심리

재난을 겪은 뒤 중간층과 중상층이 줄어드는 대신 중하층, 하층, 최하층이라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층의 경우 124명에서 153명으로, 최하층의 경우 73명에서 97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증가분은 응답자 전체의 10%가 넘었다. 즉, 재난 이후 하층과 최하층으로 전락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10%가 넘는다는 의미이다.

최하층의 경우 오히려 사건충격지수나 불안지수 및 우울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잃을 것과 희망이 거의 없다고 보는 최하층보다 하층이나 중하층에서 재난의 심리적 충격이 더 크다. 피해가 전방위적이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은 태안군의 경우 중하층, 하층뿐만 아니라 중간층 또한 재난의 심리적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주관적인 사회적 위치평가에 따른 심리충격 [재난 이전]

구분		N	평균
사건충격지수	최상위	2	88.00
	상층	7	45.57
	중상층	26	32.88

	중간층	113	32.97
	중하층	146	35.68
	하층	124	32.53
	최하층	73	26.10
	합계	491	33.04
우울지수	최상위	2	30.00
	상층	7	18.14
	중상층	26	14.81
	중간층	113	16.60
	중하층	146	17.67
	하층	124	17.22
	최하층	73	15.27
불안지수	합계	491	16.86
	최상위	2	40.00
	상층	7	17.57
	중상층	26	12.88
	중간층	113	15.46
	중하층	146	16.83
	하층	124	18.12
불안지수	최하층	73	13.11
	합계	491	16.18

표 3.10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주관적인 사회적 위치평가에 따른 심리충격 [재난 이후]

구분		N	평균
사건충격지수	최상위	1	60.00
	상층	2	41.50
	중상층	17	35.41
	중간층	86	31.02
	중하층	133	34.53
	하층	153	34.27
	최하층	97	29.46
우울지수	합계	489	32.94
	최상위	1	17.00

	상층	2	15.00
	중상층	17	14.35
	중간층	86	15.72
	중하층	133	17.54
	하층	153	17.24
	최하층	97	16.65
	합계	489	16.83
불안지수	최상위	1	24.00
	상층	2	18.00
	중상층	17	14.76
	중간층	86	13.53
	중하층	133	16.20
	하층	153	18.27
	최하층	97	15.11
불안지수	합계	489	16.13

#### 차. 재난으로 인한 질병/재난 후 병세 악화와 재난심리

전반적으로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서 각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재난으로 질병을 갖게 된 경우 사건충격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지수와 우울지수도 약간 높았다. 이 같은 경향은 재난 후 병세가 더 나빠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표 3.11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재난 후 질병발생 유무에 따른 심리변화

구분	질병발생 유무	N	평균
사건충격지수	있다	149	43.28
	없다	319	28.36
	합계	468	33.11
우울지수	있다	149	19.89
	없다	319	15.45
	합계	468	16.87

불안지수	있다	149	21.91
	없다	319	13.50
	합계	468	16.18

지역적으로 볼 때 재난이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은 봉화의 경우 사건충격지수가, 상시적으로 태풍의 피해를 입는 제주도의 경우는 우울과 불안 지수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12 기초조사 4개 지역의 재난 후 질병의 진행변화에 따른 심리변화

구분	질병의 진행변화	N	평균
사건충격지수	더 나아짐	7	37.29
	그대로	97	29.26
	더 나빠짐	123	41.82
	합계	227	36.31
우울지수	더 나아짐	7	14.14
	그대로	97	14.81
	더 나빠짐	123	19.68
	합계	227	17.43
불안지수	더 나아짐	7	12.71
	그대로	97	14.04
	더 나빠짐	123	22.10
	합계	227	18.37

### 카. 이전의 재난경험과 재난심리

응답자가 겪은 재난은 가족친지의 죽음(30.5%), 자연재해(30.3%), 전쟁(29.6%), 교통사고(13.7%), 생명위협 질병(12.1%), 일터가정사고(5.9%), 화재폭발(5.6%), 유해물질 노출(3.1%), 신체적 폭행(3.1%), 타인 상해(1.9%), 무기에 의한 공격(1.6%)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경험

을 한 재난 중 가족친지의 죽음, 교통사고, 생명위협 질병 등은 개인적으로 겪은 것이고 자연재해와 전쟁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겪은 것이었다. 이번 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적 재난은 자연재해와 전쟁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전쟁 경험은 고령자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외적 재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연재해를 이전에 겪어 본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건충격지수와 우울지수가 조금 낮았고 불안지수는 약간 더 높았다. 이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재난을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3.13 기초조사 4개 지역의 해당 재난 이전 재난에 대한 경험 유무에 따른 심리변화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사건충격 지수	있다	96	27.93	19.91
	없다	221	35.43	20.30
	합계	317	33.15	20.45
우울지수	있다	96	15.19	9.12
	없다	221	16.58	10.39
	합계	317	16.16	10.03
불안지수	있다	96	16.19	14.21
	없다	221	15.94	13.74
	합계	317	16.02	13.86

자연재해 이외에도 대체로 이전에 재난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사건충격지수와 불안지수가 좀 더 낮았다. 다만 전쟁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여러 이유(고령자, 오래전 일 등)로 인하여 최근의

재난에 대한 심리적 충격이 작지 않았는데 이는 이들의 고연령을 감안하면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전쟁 경험 때문에 이번 재난에 대한 심리적 충격이 큰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좀 더 큰 충격을 겪고 있다는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과거의 특출한 재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향후 구체적 개별 사례를 좀 더 파악하여 구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2 재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난은 개인과 사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재난이 지속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 감정적으로 곤란을 겪게 된다. 곤란현상은 여러 징후로 나타나게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행동은 일시적이고 비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적인 대처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난 상황에서 그러한 능력을 활성화하여 회복하는 능력을 보인다. 이는 보통 재난 이후의 경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난사건이 오히려 개인과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충격적인 재난사건의 경험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을 배우기도 한다. 또는 재난을 함께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더욱 가깝게 결속시키고, 개인에게는 미래를 새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

해 심리적 충격은 위기일 뿐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외상 후의 성장’ 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재난뿐 아니라 예고되었던 재난인 경우에도 심리적 압박감은 매우 크다. 그러한 현상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긴장은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간접적으로 사건 현장을 보았던 사람 및 피해자 가족과 친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또 다른 재난을 우려하고 자기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는 위기감이 증폭된다. 재난에 대한 반응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3.2.1 개인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난으로 인한 개인의 행동 반응은 감정, 인지, 신체적인 반응과 대인관계의 변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난의 심각성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징후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재난 이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큰일에 대처하는 자기의 능력에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자신에게 긍지를 가진다. 또한 무사히 재난을 넘겼다는 안도감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을 직면하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

#### 3.2.2 가족

재난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의

유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하는 역량이 더 많이 발휘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과거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 위기가 발생하면 가족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결속을 다지고 충격적 상황을 하나의 집단적 단위로 수용하거나 대처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재난 직후의 단계에 현장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때에 가족은 식구의 안전과 구조를 위해 애썼고, 이웃과 친지, 심지어 낯선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도 모든 힘을 모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감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결과에 따라 심각한 정서적 문제와 직면할 수도 있다.
- 가족이 사망했거나 부상당하여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모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정서적·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또한 물질적인 손실이 크고,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가족기능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대가족은 상처를 받기 쉽다. 연장자나 교육을 받은 이들은 상처를 덜 입는다.
-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종류나 심각성에 따라 가족 활동 및 안정감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부모와 보호자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달라진다. 아이의 재난 극복 능력은 부모/보호자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과 아이를 지지하는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재난의 충격은 부부 사이의 변화를 초래한다. 부부관계가 더욱 탄탄하게 형성되거나, 정반대로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양상

을 보이기도 한다. 재난의 혼란과 충격은 가족 구성원과 가족 단위의 항상성 회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 3.2.3 지역사회와 주민

재난은 일시적으로는 개인들의 관계 형성 방법이나 정부의 역할과 규칙 등의 변화를 일으키고, 지역사회 자원 및 사회조직의 변동을 일으킨다. 이는 재난이 기존의 행정조직이나 기능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존재와 기능’ 이 위협을 받게 된다.

재난이 발생하면 개인과 가족, 지역 사회는 이전의 개인 생활의 방식 및 공동체 생활의 방식과, 세계를 보았던 자기의 인식의 틀에 재난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통합시킴으로서 충격적인 사건을 새롭게 편성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마련되는 새로운 구조는 재난의 피해를 완화시키고 감소시키려는 복잡하고 다양한 노력과 생존자를 돕기 위한 여러 과정 등을 구상하고 정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역설적이게도 재난을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구조는 재난 이전에 그들이 살아왔던 행정 구조 및 인간관계의 구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편하게 느끼게 되고, 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재난의 특수상황에서 임시로 적용되는 사회적 질차는 ‘비인간적, 비효율적, 부적절하다’ 는 느낌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또 다른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재난 이후의 정리와 수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나친 스트레스를 2차 재난이라고 한다.

따라서 재난피해자 지원과정에서 직접적인 재난의 충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외에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 재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려는 협력과 조화로운 활동을 통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극복의 과정이 지역사회를 강화시키고 더 많은 역량을 갖추게 한다.

지역사회의 문화적 습성, 종교적 특징, 생활 방식 등은 여러 협력요인들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이다. 적절한 자원의 활용과 협력은 재난의 부정적 여파를 줄이고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유형별 안전의식 및 대응형태를 살펴보는 것은 재난피해자들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 3.2.4 자연재난

자연재난이란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대규모의 인명 손상을 초래하는 사건을 지칭한다. 자연재난의 종류에는 태풍, 호우, 홍수, 설해, 적조, 해일, 황사, 지진 등이 있다. 자연재해가 주는 특징은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다른 재난이나 재해도 불가항력적인 요소는 존재하지만 자연재난은 아직 인간이 조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그 공포와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 또한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그 피해도 다른 어떤 사고나 사건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자연재난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체로 자연재난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와 특정 시기에만 이에 대해 임시적인 대비를 하는 편이어서 체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대형화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과 정신적인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연재난은 인간이 조정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특성이 있어 그 공포와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음은 이와 같은 자연재난 피해자들은 어떤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고, 위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 가. 재난피해자의 안전의식 및 위기대응 형태

여러 연구에서 가장 극심한 재난을 겪은 사람들도 무능력하지만은 않고 대부분 자기 기능을 찾아간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 이러한 최종적인 과정에 다다르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처방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재난 후에 가장 적합한 대처반응은 긍정적인 대처방법들이 해당되는데, 긍정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개인적으로 참아내기 어려운 고통을 참아낼 수 있다.
-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
-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다.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는 개인의 사회적 및 정서적 자원을 공유

하도록 만든다. 대응 유형에 따라 개개인이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여기서 사회적 지원체계는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와 같은 대인관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통해 개인은 지지가 필요할 때, 이해가 필요할 때, 그리고 재난 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가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재난피해자들의 대응형태는 크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재난 후에 긍정적인 대응 형태와 부정적 대응형태인데, 이번 조사 대상자들도 삶을 위협한 재난에 대해 두 형태의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회복된 주민들의 경우 긍정적인 대응을,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의 경우 부정적 대응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응 형태에 대해 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적인 대처 기술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대처 기술을 사용하도록 이끌어 재난 후에 가능한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심리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다시 재난이 닥쳤을 경우 해당 주민들이 긍정적인 대응을 하게 함으로써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 긍정적인 대응 형태

- 주위가 분산된 것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초점을 둔다.
-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한다.
- 위급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 지원 자원들을 적절하게 이용한다.

- 경험의 정서적인 측면을 동시에 다룬다.
- 고통스러운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한다.
- 고통을 인식 하지만 아픈 감정에 대한 집착은 피한다.
- 불확실한 전략에서 개입 가능한 전략으로 발전시킨다.
- 각 단계마다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을 참아낸다.
- 환경적인 변화를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로 인식한다.
- 긴장을 낮추는 방법 중 파괴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  
(예: 운동, 식습관, 시간관리, 이완 훈련 등)

### 2) 부정적인 대응 형태

- 과도한 부정, 철수, 위협, 회피를 한다.
- 비현실적인 공상을 하고, 현실검증능력이 떨어진다.
-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거나, 피해의식이 있다.
- 타인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과하게 의존적인 행동을 한다.
-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유능하게 다루는 기술이 없다.
- ‘무기력감-희망 없음-포기’의 정서적 패턴이 있다.
- 목적 없이 행동한다.
- 일과 휴식 사이에서 잘 조절하지 못하고 피곤해 한다.
- 약물에 의존하고 물질 남용을 한다.  
(예: 알코올, 수면제의 사용증가 등)
- 지원체계를 통해 잘 지원받지 못한다.

위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대응형태는 실제 재난피해자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방법들이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대 재난피해자들 중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한 대상자들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그러하였다. 물난리가 발생한지 10년도 더 지났지만 여전히 당시의 힘들었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외상의 충격으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대 재난피해자들이 보인 재난대응형태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이었고, 일부 긍정적인 것도 있었다.

이 지역 재난피해 주민들이 보인 공통적인 반응은 ‘무기력감-희망 없음-포기’로서, 정서적 패턴이 있었으며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서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는 면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 및 정보의 부족이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담 대상자 중 몇 명은 약물에 의존하고 알코올을 남용하고 있었다. 심층 면담자 중 소수는 화를 잘 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의식 또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물난리 사건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 철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정적인 대응 형태의 재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생활의 어려움과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주민들의 사례를 통해 재난 피해자들이 재난 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2006년 7월 수해를 당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일대 주민들의 심층 면담 내용과 면담자의 의견 중 일부를 요약·정리 한 것이다.

(1) 70대 노부부

- 이 노부부는 그 당시 기억으로 현재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었으며, 비가 오면 물난리 당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함. 물난리 이후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듯 보였음
- 노부부의 손자는 물난리 이후 지금까지도 그 때의 경험 때문에 비만 오면 겁이 나서 학교에서 혼자 귀가하지 못하고 있음. 이것은 재난피해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재난피해 심리지원 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면담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물난리로 인해 노부부와 그 손자는 지금까지도 힘들어 하고 있으며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2) 70대 할머니

- 할머니는 지금도 비가 오면 물난리 났던 그 때가 생각이 나서 가슴이 쿵덕거린다고 하였음. 물난리 이후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지고 자꾸 죽고 싶다는 말을 하였음
- 집 안에는 파리가 많이(15마리 이상) 날아다니고 있었는데도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아 하셨으며 음식 위에 파리가 앉아있었는데도 관심 없어 했음
- 면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물난리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3) 50대 중반의 남성

- 물난리 이후 지금까지도 비가 오면 그 때의 경험 때문에 물이 잘 흘러가고 있나 확인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또한 보상 문제에 있어서 이웃과 문제가 있었고, 이제 더 이상 이웃을 믿지 못하겠다는 부분에서 재난피해가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추후 재난피해 심리지원 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70대 노부부

- 이 노부부는 물난리 이후로 비가 올 때 마다 걱정을 많이 하였음. 특히 할아버지는 물난리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후유증이 심한 것으로 보였음.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심리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채 보수 공사 및 보상금만 받았기 때문에 비에 대한 공포감 또는 불안감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5) 60대 후반의 할머니

- 할머니는 물난리로 인한 보상금을 충분히 못 받았다고 하였고, 신체적 증상을 호소했음. 또한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현저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고 계셨음. 가족들과 연락을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매우 낮아 보였음  
- 이웃들과는 자주 왕래하며 대화를 나누지만, 요즘은 허리와 다리가 아파서 이웃이 찾아오지 않는 한 쉽게 만날 수 없다고 호소함  
- 심리적 · 신체적 증상을 현저하게 호소했기 때문에 집중적이

고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나. 자연재난 피해지역 주민들이 경험하는 문제들**

자연재난 피해지역 주민들은 갑작스런 삶의 위협에 대해 긍정적인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 특히, 자연재난의 경우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막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에 압도 당해 있기 때문에 이웃의 문제를 살피지 못한다. 또한 재난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피해 지역의 복구에 있어서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주민 간 갈등을 더 깊게 만든다.

**1) 마을주민 간 갈등**

마을이 고립되면 외부의 지원이 무척 고맙다. 특히, 고립되었을 때의 상태와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데, 이때에 바로 개인 및 집단 디브리핑(debriefing)을 실시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자기의 고통이 다른 이의 무엇보다 크다고 느끼는 것처럼 재난지역의 피해자는 자신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고 여긴다. 각자의 경험과 외로움, 서러움 등을 함께 나눌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웃이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난이라는 큰 경험을 한 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정의’나 ‘예의’를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 다가 올 분배와 복구과정에 마을 주민 간 화합을 위해서도 디브리핑(debriefing)의 단계는 중요하다.

**2) 분배의 문제**

자연재난이 일어나면 마을 등 공동체가 고립되고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외부에서 공수되는 물품, 인력 지원이 자연재난피해자의 갈등의 요소가 된다. 연락이 닿지 않는 가운데 공동의 분배를 결정하고 배급하는 일은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누가 더 많이 받았는가, 어느 집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들락거리는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집과 일터가 사라진 피해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작은 것에 질투하고, 잘못이 보이는 개인 또는 집단을 질타하기에 힘을 쏟아 붓게 되는데 이 때 적절한 자제와 규칙을 선정할 인력이 필요하다.

### 3) 제안

- (1) 자원봉사자 및 지원물품의 고른 분배규칙의 설정 및 분배인력의 배치를 한다.
- (2) 마을주민을 위한 집단 디브리핑(debriefing)의 기회를 제공한다.
- (3) 재난 후의 질서를 확립할 규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3.2.5 인적재난

인적재난이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 사고로 인한 대규모의 재난을 말한다. 인적재난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어촌보다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통행량이 많은 거대도시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발생한 인적재난으로는 건축물화재사고, 가스 폭발사고, 유류누출사고, 전기사고, 광산붕괴사고, 문화재 화재사고,

산업안전사고, 환경오염, 조난사고, 건물, 교량 등의 시설물 붕괴사고, 항공기사고, 열차사고, 지하철사고 등 수없이 많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도시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갑자기 발생하는 인적 재난은 자연재난보다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더욱 크고, 일상적인 삶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다. 이처럼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인명과 재산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고의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상응하게 정부의 재난관리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인위적인 재난의 경우 가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고 또한 피해자의 경우 보상 심리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적재난에 대한 피해보상이 피해자의 정신적 및 신체적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인적재난은 특히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혐오감을 발생시킬 수가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나 사후 처방이 미비한 실정이다.

### 가. 인적재난 피해지역 주민들이 경험하는 문제들

다음은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의 대응형태와 이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정리 한 것이다.

#### 1) 외부와의 고립

자연재난피해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과 고통은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자연재난피해자는 영웅담처럼 이야기 하거나 한탄과 같은 하소연을 이야기하는 것을 거리까지 않고 술술 털어놓는 데 반해, 인적재난피해자는 재난 후 대인관계를 피하고, 집 밖으로 나서지 않는 등(심한 경우에는 방에서도 나서지 않음) 외부와의 접촉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

### 2) 보상의 문제

인적재난 피해자의 스트레스 및 심적 갈등, 심리적 충격의 가장 큰 원인은 해당 사고 보다 사고 후에 발생한다. 인적재난의 원인을 따지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보상이며 이 보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이다. 유가족과 부상자는 보상으로 서로를 헐뜯고 싸우며 상처를 입히게 된다. 법률과 행정 문제의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가 이 모든 일을 주관적으로 담당하게 되므로 재난으로 겪게 되는 심리적 충격과 반응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상금은 가족 간의 갈등과 피해자 간의 해체 등을 양산한다. 대구지하철 생존자 중, 사고 5년이 지난 후 이혼가정 및 가족 해체가 일어난 경우를 보았다. 유가족의 경우도 보상금의 목적과 쓰임을 가지고 가족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 3) 제안

피해 당사자들에게 보상, 소송 등의 문제를 직접 떠안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피해자를 위한 방문활동이 필수적이다.

## 제 4 장 재난피해자 지원의 실제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품의 모집절차·사용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재민, 일시대피자, 재해로 인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며, 구호기관은 구호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재해구호법」 제2조, 제3조).

구호의 종류는 ①임시주거시설의 제공, ②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③의료서비스의 제공, ④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⑤위생지도, ⑥장사(葬事)의 지원, ⑦심리회복의 지원이 있다(「재해구호법」 제4조). 구호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질적 지원 및 정신적·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지역별재해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할지역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식량·침구·의류 등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제3조).

10년의 지역별 재해발생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변화하는 재해의 특성과 환경에 적응·대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예상이 곤란한 재해를 비롯하여, 국지성 호우, 폭염 등이

신중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10년을 기준으로 재해구호물자의 종류와 확보 수량을 정하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4.1 물적 지원: 구호물품 Kit

##### 4.1.1 재해구호물자의 종류와 기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남·여 성별에 따른 응급구호세트와 1세대 4명을 기준으로 한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세트, 비상식량과 그 밖의 개별구호물품이 규정되어 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1 응급구호세트(남자): 1명 기준

구분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규격	200cm×150cm, 1.3kg 200cm×150cm, 0.7kg	일반용	100g	80cm×40cm	미용티슈
수량	2장	1개	1개	2장	1개

구분	면장갑	간소복	면도기	속내의	양말	바닥용 매트	슬리퍼
규격	반코팅	면폴리 혼방	1회용	면	면	우레탄, 방수 70cm×200cm	대, 중, 소
수량	1켢레	1벌	1개	2벌	2켢레	1개	1족

구분	베개	안대	귀마개	치약	물티슈	생수
규격	PVC 38cm×28cm×10cm	-	-	130g	60매	1리터
수량	1개	1개	1개	-	-	-

※ 의류(간소복, 속내의)는 크기에 따라 대(남 105)·중(남 100)·소(남 95)로 구분하고, 대·중·소 구성비율은 3:5:2로 한다.

표 4.2 응급구호세트(여자): 1명 기준

구분	담요	칫솔	세면비누	수건	화장지
규격	200cm×150cm 1.3kg 200cm×150cm 0.7kg	일반용	100g	80cm×40cm	미용티슈
수량	2장	1개	1개	2장	1개

구분	면장갑	간소복	속내의	양말	바닥용 매트	슬리퍼
규격	반코팅	면폴리 혼방	면	면	우레탄, 방수 70cm×200cm	대, 중, 소
수량	1켢레	1벌	2벌	2켢레	1개	1족

구분	베개	안대	귀마개	치약	물티슈	생수	생리대
규격	PVC 38cm×28cm×10cm	-	-	130g	60매	1L	일반 중형
수량	1개	1개	1개	-	-	-	1조

※ 의류(간소복, 속내의)는 크기에 따라 대(여 100)·중(여 95)·소(여 90)로 구분하고 대·중·소 구성비율은 3:5:2로 한다.

표 4.3 취사구호세트(1세대 4명 기준)

구분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비누	세탁 세제	주방 세제	고무장갑
규격	휴대용	4인용	스테인 리스스틸	230g	1kg	500g	고급형
수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켢레

구분	수세미	다용도 가방	쌀	부식류	부탄 가스	살균·표백제
규격	부직포	PE 타포린	10kg	고추장, 간장, 된장 및 김치 등	-	-
수량	2개	1개	1개	-	4개	1개

개별구호세트는 1명을 기준으로 모포 2매가 제공된다. 비상식량은 그 밖의 부식 및 즉석식품이 포함된다. 그 밖의 개별구호물품으로는 응급의약품(포비돈요오드, 푸시드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연고, 과산화수소, 밴드, 붕대, 반창고, 거즈, 핀셋, 스프레이파스 및 구급상자 등), 분유세트(분유 및 젓병), 기저귀, 모기약 등이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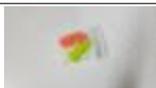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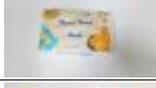
응급구호세트 중에서 치약·물티슈·생수·생리대, 취사구호세트 중에서 쌀·부식류·부탄가스·살균·표백제, 비상식량 및 분유세트 등 유통기간이 짧거나 화재위험 등으로 인하여 장기보관이 어려운 개별구호물품은 미리 구매처를 확보하여 재해발생 즉시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4.1.2 재해구호물자의 실측 및 분석

본 연구진은 재해구호협회에서 지급하는 구호물품세트를 확보하여 이에 대한 실측을 진행하였다. 우선 구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물품세트와 동일한 것을 개봉하여 실측하였다. 전체 구호물품은 연구진이 직접 착용 및 사용을 해 보았으며 행정학·심리학 전공자 및 경찰학 전공 대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착용 및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의견을 종합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가. 응급구호세트(남성)

표 4.4 응급구호세트 (남성)

연번	사진	지급품명		제원 (cm)	수량
		품목	세부명		
1		응급구호 세트 (남 / 소)	세트 케이스	43*59.5 *32.5 플라스틱	1개
2		모포	모포	200*150 그레이 (극세사)1 체크(폴리)1	2개
3		귀마개		케이스 1 (6*1.6) 귀마개 4	1set (4ea)
4		칫솔	칫솔, 칫솔 케이스	19.5*4.5*2.8	1set
5		면도기	도로코 면도기	3종날 13.5	1개
6		세면비누		4.8*0.5	1개
7		수건		80*40 살구색1, 연두색1	2개
8		화장지	미용티슈	20*15.5, 70매	1set
9		베개	에어베개	38*28*10	1개

10		장갑	반코팅 장갑	21.5*9.5	1켤레
11		체육복(小)	상의	호칭: 95 가슴단면: 49.5 총장: 60	1벌
			하의	총장: 96	1벌
12		런닝	남성용 런닝	95(M)면	2벌
13		팬티	남성용 사각팬티	95면	2벌
14		양말	단목양말	(폴리에스터)	2켤레
15		매트	접이식 발포매트	200*70*1	1set 매트, 가방
16		슬리퍼		26 (PVC)	1켤레
17		안대	수면안대	19.5*10	1개

응급구호세트는 플라스틱 멀티박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케이스를 포함하여 17개의 물품으로 되어있다.

### 나. 응급구호세트(여성)

여성의 응급구호세트도 남성과 동일하게 플라스틱 멀티박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케이스를 포함하여 17개의 물품으로 되어있다.

표 4.5 응급구호세트(여성)

연번	사진	지급품명		제원 (cm)	수량
		품명	세부명		
1		응급구호 세트 (여 / 중)	세트 케이스	43*59.5 *32.5 플라스틱	1개
2		모포	모포	200*150 그레이 (크세사)1 체크 (플리)1	2개
3		키마개		케이스 1 (6*1.6) 키마개 4	1set (4ea)
4		칫솔	칫솔 칫솔케이스	19.5*4.5 *2.8	1set
5		면도기	일회용 면도기	3중날 13.5	1개
6		세면비누		4.8*0.5	1개
7		수건		80*40 살구색1, 연두색1	2개

8		화장지	미용티슈	20*15.5, 70매	1set
9		베개	에어베개	38*28*10	1개
10		장갑	반코팅장갑	20.5*9.5	1켤레
11		체육복(中)	상의	호칭: 95 가슴단면: 45 총장: 54.5	1벌
			하의	총장: 91.5	1벌
12		런닝	여성용 런닝	95(L) 면 화이트 2	2벌
13		팬티	여성용 삼각팬티	95 면 핑크1, 그레이1	2벌
14		양말	단목양말	폴리에스터	2켤레
15		매트	접이식 발포매트	200*70*1	1set 매트, 가방
16		슬리퍼		240 PVC	1켤레

17		안대	수면안대	19.5*10	1개
----	---	----	------	---------	----

#### 다. 취사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포함하여 내부 물품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19개로 구성되어 있다. 물품의 구성은 취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호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이나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구호세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4.6 취사구호세트

연번	사진	지급품명		제원 (cm)	수량
		품목	세부명		
1		취사구호 세트 케이스		50*35.5 *26.5	1
2		버너	캠프II	24*9*20 (1.58kg)	1
3		비누	재활용고형 세탁비누	9.4*6.3*3 (240g)	1
4		세탁세제	퍼팩트(애경)	10*15 *12.5 (1kg)	1

5		주방세제	참그린 녹차뽕드득	9*5*19.5 (480ml, 500g)	1
6		고무장갑	고무장갑(L)	37*22	1
7		수세미	양면 수세미	6.5*13*3	2
8		코펠	코펠세트	20.2*17	1set
9			용기(대)	20.2*12.8	1
10			용기(대)뚜껑	20.2*3.3	1
11			용기(중)	18.2*10.7	1
12		코펠	용기(중)뚜껑	18.2*3	1
13			용기(소)	16.1*9	1
14			용기(소)뚜껑	16.1*3	1
15			후라이팬	20.2*4.3	1
16		코펠	식기		4
17			국자		1
18			주걱		1
19			수저세트		4set

구호물품에 대한 분석 및 체험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품세트의 크기가 너무 크다. 내부 구성물품을 고려할 때, 현재의 크기보다 작은 케이스로 구성되어도 충분히 물품을 포함하여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케이스의 재질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파손될 우려가 있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적재 및 전달에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크기는 복잡한 재난현장 및 협소한 대피소의 여건을 고려할 때 작은 사이즈로의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케이스 재질 및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케이스

는 내부 물품을 보호하는데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플라스틱 케이스는 구호 대상자들이 다른 물품을 보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중에 방수천과 내부 철재로 만들어진 보다 활용도가 높은 멀티박스가 다양하게 있다. 전달 및 이송, 재난 피해자들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1 멀티박스<sup>8)</sup>

셋째, 디자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구성물품은 비교적 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체육복, 속옷, 슬리퍼 등은 물건의 색상과 디자인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물건을 참고 써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부적응과 우울감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물품 체험자들의 의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오히려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착용하고 있을 경우, 자기 존중감이 감소되고 현실을 비난하거나 심리적

8) 자료: <http://www.11st.co.kr>

퇴행이 일어날 수 있다. 예산의 확보를 통해서라도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서 디자인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넷째, 실용적인 제품으로의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휴대용 버너를 비롯하여 취사구호세트는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예산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보다 휴대가 용이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제품으로 대체가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난 피해 현장에서 구호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보급 및 전달받고 휴대하기 편리하며, 사용함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높은 제품이 필요하다.

다섯째, 구호물품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0년의 재해발생과 구호물자지원 실적,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구호물자의 확보와 비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뿐만 아니라 재해 경험자·피해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구호물품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지원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난관리청에서 100명이 1주일 이용의 기준으로 재난구호물품과 배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해가 발생된 계절을 고려하여 식료품과 의류가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시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표 4.7 재난관리청 재난구호물품 배치 기준<sup>9)</sup>

연번	품명	규격	수량
1	담요	모직: 30% 80*62cm 면 : 흰색 66*90cm	각각 200개 이상
2	재난대비 간이용 침대	H : 16"min w/mat.-19" max w/mat. W : 30"min-36"max. L : 80"min Unit Weight : 40 lbs max Supports a minimum of 350 lbs	Up to 100 each
3	식기구	Plastic Fork, Knigem Spoon & Napkin; 2-4 Persons Daily	2,100~2,800 weekly
4	음료	Includes Concentrated Drink Mix for Punch & Lemonade, Juice, Tea & Instant Hot Chocolate	2,100~2,800 weekly
5	병에 든 생수	1인당 하루 3L	2,100 L weekly
6	음료수용 디스펜서, 캠브로(절연식)	Model 500LCD-157	셸터 당 5~10대
7	푸드케어	Models 100MPCHL-158; UPCS180-401; UPCS160-110	셸터 당 40개
8	종이타올 디스펜서	Cambro Model HWAPR-110	셸터 당 1개
9	야전용 비상식 (Shelf Stable Meals)	1인당 2개	주당 1400개
10	식료품	그릇, 냉동과일 및 단백질 단백질 가공식품	재해시 결정(TBD)
11	의류(여름용, 겨울용)	겨울 : 스웨터 여름 : 상의 & 바지 성인 90 %. 어린이 10% (다양한 크기)	재해시 결정(TBD)

9) 자료: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ommonly Used Sheltering Items & Services Listing", 2013.

표 4.8 미국 개인별 지급 구호물품<sup>10)</sup>

연번	품명	규격
1	향균 물티슈	여행용 15팩
2	향균비누	1oz 이하
3	개인용 빗(일자형)	Plastic, 5"
4	탈취제, 무취제	1.5oz 이하
5	미용티슈(2겹)	여행용 15
6	머리빗	
7	핸드, 바디로션	2oz이하
8	면도날, (커버 포함)	3개 1회용
9	샴푸	2oz이하
10	컨디셔너	2oz이하
11	셰이빙크림	2.5oz이하
12	성인용 칫솔	부드러운모, 포장상태
13	치약	0.85oz이하
14	가글액	1.5oz 이하
15	수건	흰색, 면, 12*12
16	패치 손가방(비닐봉지)	플라스틱, 흰색, 15*18*4

## 4.2 구호물품 Kit의 해외사례

우리나라는 자연·사회적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능력은 해외 선진사례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자연·사회적 재난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재난의 유형에 따라 이재민이 필요로 하는 구호물품은 상이해야 한다. 현재 구호체계 하에서는 재난의 종류와

10) 자료: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Longterm Investigation of Disaster Victims and Development of Life-friendly Relief Policy Technology", 2017.

무관하게 동일 품목으로 구성된 구호물품 kit(응급구호세트 및 취사 구호세트)를 지급하고 있다. 둘째, 앞선 문제의 연장선으로서 재난의 특징에 따른 구호물품 제공기준이 비재하다. 각 재난별 특징을 포착하고 이러한 특징에 기초하여 구호물품을 준비하고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첫째, 해외의 재난구호물품체계 및 품목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대피소에 제공되는 물품과 구성품을 고려할 목적으로 해외의 난민을 위한 구호물품을 분석한다. 난민을 위한 구호물품으로는 피난처와 의류, 식품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내용을 분석하겠다. 셋째, 국내 재난과 재난피해자를 직접 대응해야 하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호물품 kit에 대한 의견과 대피소 필요한 구조 등의 의견을 조사한다. 본 조사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구호체계 개선에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 4.2.1 미국 사례

미국은 1950년 연방재해방지법(The Federal Disaster Act)이 제정되어 연방차원의 재난예방체계를 갖추었으며, 1988년 스태포드 재해구조와 긴급사태 구호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의 개정으로 현재 미국연방정부의 구호시스템이 구축되었다(소방방재청, 2007; 국립재난연구원, 2014). 미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National Response Framework: NRF)에는 15개의 긴급지원기능(Emergency Support Framework: ESF)을 명시하고, 집단구호(Mass Care) 주무기관을 다음의 <표 4.9>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표 4.9 미국의 집단구호(mass care) 지원기관 업무<sup>11)</sup>

기관	역할
농무부	• 애원동물 보호, 인력지원, 식료품 지원(현물 및 식권제공), 구호물품 지급(가능시)
국방부	• 피난처 및 기간시설 응급복구 지원, 임시보호시설 건설지원, 주택 및 임시주거시설 보수지원
보건복지부	• 전문복지서비스 지원(전문인력지원), 공중위생 및 의료지원, 동물의료지원
국토안보부	• 재난관리 계획, 경감, 대응, 복구
주택도시 개발부	• 주거지원(이재민 임대주택 보증, 주거지원 상담 등)
내무부	• 구호물품 지원(가능시), 재정 및 장비 배분 및 지원
법무부	• 범죄(테러 등)에 대한 피해자 지원
노동부	• 자원 근무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활동지원, 재해실험 지원
교통부	• 교통정보 제공 및 운송활동 지원
재무부	• 기업 자산소실에 대한 주세 및 담배세금 환불, 피해자에 대한 세금우대, 공제 및 환급, 대출금 상환유예, 세금 미납에 따른 이자 면제

미국의 구호물품은 3일분의 비상식량 및 식수, 라디오, 구급약품, 판초, 손전등 및 건전지, 방수성냥 2개, 50피트 나일론 줄, 다용도 칼, 나일론 배낭이 기본 구성품으로 되어있으며, 재해지역 선포 시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25~75%의 구호기금을 지원받아 임시거처, 보조금, 대출, 실업수당 등과 같은 금전적·심리적 서비스를 재난피해자에게 제공한다. 이와 같은 품목은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축할 것으로 권고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100명 중 8명, 어린이는 100명 중 25명인 것으로 가정하고 이들의 수요를 고려하

11) 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2)

여 물품을 비축해야 한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의료용 소모품 등을 고려하여 환자용 침대와 안전바를 갖춘 화장실, 목발, 물티슈, 흡수성 패드, 폐기물 봉투, 증류수 등도 함께 비축할 것을 권장한다.

구호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배분과 구호물품의 비축기준을 살펴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구호체계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정형화된 재해구호물품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인의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구호물품의 사전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America Red Cross, Peace of Mind USA, The Emergency Preparedness, Web Soft, Emergency Preparedness International 등의 기관에서 구호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있다. 다음의 <표 4.10>은 미국 적십자, 정부기관, 비영리기관 등에서 판매하는 구호물품의 구성품(재난구호물품, 생존키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4.10 미국 내 정부민간단체의 판매용 구호물품

구분	항목	품목	내용
재난 구호 물품	일반 품목	① 음식과 물	• 최소 3일분의 음식과 물(1인당 1갤런)
		② 건강용품	• 최소 3일분의 의약품 • 여분의 배터리, 지팡이, 보청기와 같이 편의를 위해 필요한 의료용품
		③ 개인관리 항목	• 비누, 칫솔과 치약, 이기용 손수건, 콘택트 렌즈 또는 안경, 물티슈와 쓰레기봉투 등 개인 위생도구
		④ 안전용품	• 구급상자, 비상담요, 다목적도구(칼, 펜치, 드라이버 등), 호루라기

	추가 품목	⑤ 전자기기	• 플래쉬, 상황파악을 위한 라디오, 충전기와 휴대전화, 여분의 배터리	
		⑥ 서류	• 보험카드등 및 예방접종 기록과 같은 중요한 문서의 사본,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 가족의 비상 연락처 정보가 들어있는 가족비상계획 서류	
		⑦ 기타	• 여분의 현금, 지도, 여분의 차 열쇠와 집 열쇠, 여분의 옷 1벌, 비상용 담요, 종이와 펜	
	가정	① 어린이	• 아기 젖병, 분유, 이유식, 기저귀 • 어린이를 위한 게임활동(예: 인형, 보드게임 등)	
		② 노인	• 틀니, 개인이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③ 애완동물	• 사료: 고양이나 개는 일반적으로 3일 동안 1갤런의 물이 필요 • 청소용품: 애완동물에 따라 작은 상자, 타월, 비닐봉투 등 • 건강용품: 의약품 및 방수용기에 저장된 의료기록, 애완동물용 응급처치키트 • 이동장치: 튼튼한 가죽끈, 캐리어 등(수송용)	
		④ 소모품	• 도끼, 삽, 드라이버, 망치, 견인을 위한 로프, 테이프	
	생존 키트	가정	② 보호용품	• 깨진 유리, 못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신발, 장갑, 쥘, 성냥, 텐트, 담요, 어린이를 위한 오락용품, 필수약품, 여분의 배터리, 휴대용 라디오, 손전등, 소화기, 음식과 물, 휴지 등
			차량용	• 담요, 생수, 여분의 옷, 소화기, 응급처치키트, 비상신호장치, 손전등, 지도 및 손전등,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 호루라기 등
		사무실용	• 식품, 생수, 재킷, 배터리 및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 응급처치키트, 안경, 호루라기 또는 그 외 다른 신호장치	

미국의 국토안보부에서는 Ready Campaign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 개인의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구호물자를 스스로 비축하도록 권장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최소 3일 생존이 가능한 기본물품을 준비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최소 두 종류의 구호물품 kit를 준비하여 가정에 하나를 비축하고, 나머지 하나는 직장이나 차량 또는 기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에 두도록 제안한다. 다음 <표 4.11>는 Ready Campaign에서 제안하고 있는 물품이다.

표 4.11 Items of Ready Campaign<sup>12)</sup>

구분	품목
기본 비상물품키트 추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수용 및 개인위생용 물(하루 1인당 3갤런 3일치)</li> <li>• 부패하지 않은 식품(최소 3일간 먹을 수 있는 분량)</li> <li>• 배터리 또는 수동 발전식 라디오와 소리경보가 나오는 라디오, 손전등, 비상용 키트</li> <li>• 오염된 공기를 걸러주는 방진마스크, 피난용 플라스틱 시트 및 테이프, 호루라기</li> <li>• 개인위생용 물티슈, 쓰레기봉투</li> <li>• 전기, 가스, 수도 차단용을 위한 스페너</li> <li>• 광통 띠틈(비상키트에 캔 음식이 있는 경우), 지역지도, 휴대폰 및 충전기</li> </ul>
비상물품키트 추가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방약 및 안경, 영아용 분유 및 기저귀, 애완동물용 사료 및 추가식수</li> <li>• 휴대가능 및 방수 보관용기에 보관한 중요 가족문서(예: 보험증서, 신분증 및 은행계좌기록), 현금 또는 여행자수표, 잔돈</li> <li>• 응급조치안내서 또는 <a href="http://www.ready.gov">www.ready.gov</a>에서 입수한 정보 같은 응급시 참조자료</li> <li>• 개인별 침낭 또는 보온담요(지역 날씨가 추운 경우 추가 침구류 고려)</li> </ul>

12) 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2), FEMA홈페이지(<http://fema.go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소매 셔츠, 긴바지 및 두터운 신발 포함 여벌 의복 (지역날씨가 추운 경우 추가 의복 고려)</li> <li>가정용 염소 표백제 및 약 스프이트, 소화기, 방수용기에 보관한 성냥</li> <li>여성용품 및 개인위생품, 간식식거류, 종이컵, 접시 및 플라스틱용구, 페이퍼타월</li> <li>종이 및 연필, 책, 게임, 퍼즐 또는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li> </ul>
응급조치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라텍스 장갑 한 켤레 또는 기타 멸균 장갑, 지혈용 멸균 드레싱, 기위, 핀셋</li> <li>항생제, 항생 물질이 포함된 물티슈, 화상용 연고, 점착성 반창고(대형한 크기)</li> <li>점안 용액제, 온도계(체온계)</li> <li>인슐린, 심장병, 천식용 흡입기 등 매일 사용하는 약품, 포도당, 혈압측정기 등 의료물품, 아스피린 또는 비아스피린계 진통제</li> <li>지사제, 제산제, 완화제</li> </ul>

미국의 Ready Campaign은 국민들이 스스로 갖추어야 할 필수물품의 선정뿐 아니라 캠페인의 운영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2.2 일본 사례

일본의 도쿄도는 30년 이내 남간토에서 직하형 대규모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70%로 가정하고 있다. 도쿄만 북부에 수도직하지진 M7.3 규모가 발생할 경우, 인적피해로 사망자 약 9,700명, 부상자 약 147,600명, 귀가곤란자 517만 명이 발생하며, 건물피해로 약 30만동이 흔들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진 외에도 풍수해, 화산에 대한 위험이 잠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구호물품 비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진과 같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한도시의 방재노력만으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와 식량·식수 및 생활필수품의 공급과 의료구호

등을 중심으로 상호협정을 맺고 있다(도쿄도 방재 가이드북, 2017).

표 4.12 주요 구호물품 kit 항목 -도쿄도13)

구분	일상용도 (상시구비)	재해용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음료용, 조리용) 2L 12병</li> <li>휴대용 곤로 1개, 가스봉베 2세트(6병)</li> <li>상비약 2~3종 각 1박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이화장실(30회 사용분), 전등2개</li> <li>건전지 필요분, 충전식 라디오 등 1개</li> </ul>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무세미(가공쌀) 5kg, 인스턴트밥 6개, 건면 1팩, 즉석면 3개</li> <li>반찬통조림(고등어 된장조림, 야채 등) 각 6캔, 인스턴트 식품 9팩, 통조림 1캔</li> <li>야채주스 9병, 음료(500ml) 6병</li> <li>치즈, 어묵 등 각 1팩, 과자류 3개</li> <li>영양보조식품 3박스, 드링크분말 1봉지</li> <li>조미료 각 1세트</li> </ul>	
생활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 비닐봉투, 쓰레기봉투 1팩(30매)</li> <li>비닐봉투 1개, 구급함 1개, 랩 1개</li> <li>티슈 1팩(5개), 화장지 1팩(12개), 물티슈1팩(제균 100매입)</li> <li>일회용 콘택트렌즈 1박스(1개월분)</li> <li>일회용 난로 1봉지(10개), 토치 1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대폰 예비 배터리 3개(휴대전화 대수분)</li> <li>라텍스 장갑, 위생장갑 1박스(조리용, 100매)</li> </ul>
여성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리용품 2팩(30개*2)</li> </ul>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유 2박스(스틱타입 10개*2)</li> <li>이유식 일주일분(알레르기 처리)</li> <li>엉덩이 닦이 물티슈 1팩</li> <li>기저귀 1팩(70매)</li> </ul>	

13) 도쿄도 방재 가이드 북 (2017)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죽 등 부드러운 식품 일주일분 이상</li> <li>• 상비약(처방약) 1세트</li> <li>• 보청기용 배터리 6개, 틀니 세정제 1박스</li> </ul>
-----	--

한편 위 구호물품 kit 항목 외에도 비상용 가방을 준비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가정용, 직장용, 직장용, 그 외 물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4.13 상황별 '비상용 가방' 품목 -도쿄도<sup>14)</sup>

구분	일상용도 (상시구비)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헬멧, 방재두건, 면장갑, 담요, 건전지, 양초, 물</li> <li>• 식품(인스턴트 라면, 통조림 및 따개), 나이프, 젓병</li> <li>• 의류, 현금, 구급함, 적금통장, 인감</li> </ul>
휴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용 라디오, 휴대전화용 충전기, 호루라기, 지도, 손전등, 칫솔, 동전, 물통</li> <li>• 건전지, 간이화장실, 구급세트 및 담요</li> </ul>
직장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걸기 편한 신발, 헬멧, 비상식량, 손전등, 구급세트, 면장갑, 침낭, 간이화장실</li> <li>• 우비, 물통</li> </ul>
기타 (소중한 물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사진, 면허증, 연금수첩, 적금통장, 건강보험증, 인감, 주식, 약수첩 등</li> </ul>

가정용 비상가방은 피난 시 당장 필요하게 되는 최소한의 물품을 담은 가방이며, 배낭에 넣어 현관 근처나 침실, 차 안, 창고 등에 비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휴대용 비상가방의 품목은 외출 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필요한 품목을 넣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직장용 비상가방의 품목은 회사에서 묵을 경우나 자택까지

14) 도쿄도 방재 가이드 북 (2017)

걸어서 가는 경우를 상정하고 품목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이로 된 증서나 증명서, 인감, 가족사진은 만일을 위해 지퍼가 달린 비닐케이스에 넣어 보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도쿄도 방재 가이드북, 2017).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재난구호물품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 나라 모두 국가의 지원은 개인이 가져야 할 비상물품이 무엇인지를 안내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지자체와 국가가 재난관련 홈페이지에서 연령별, 상황별, 재난별 특수한 상황에서의 구호물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각 재난에 따른 피해규모를 미리 산정하고 그에 맞춘 구호물품 양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가정 내에서 직장 내에서 재난발생 시 필요한 물품과 동선,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재해구호 kit와 비교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4.2.3 기타 사례: 디자인적 측면

최근 재난재해 지역의 피해자를 위한 구호물품에도 디자인 개념을 접목하려는 전 세계적인 시도가 이루어진지 이미 오래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 및 지속가능 디자인(eco-friendly & sustainable design)이 재난피해지역의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정신적·물리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호물품과 그에 관련된 디자인이 사회적 역할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행자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전략 중 '안전디자인(safety by design) 개념의 전 영역의 확산' 이 주요 9항목 중 두 번째 항목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인간적인 측면을 고

려한 구호물품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재난피해자를 위한 구호물품과 그에 관련된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세계적 디자인의 흐름과 사례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구호물품 디자인에 구현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호물품으로서 의류, 식품, 피난소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피해자를 고려한 디자인 사례를 분석한다.

재난지역 피해자를 위한 디자인의 요소 중 무엇 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여 물리적이며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친인간적 디자인의 대표적 인물로, 미국의 건축가 buckminster 풀러(Buckminster Fuller)와 시게루 반(Shigeru Ban)을 들 수 있다. buckminster 풀러는 1970년대에 레바논 전쟁난민을 위해 구호천막을 고안해냈다(그림 4.4 참조). 풀러의 구호천막은 돔(dome)형으로 소형·경량패트병으로 만들어 비, 바람, 눈에 견디기에 쉽도록 하였다. 이 디자인은 이후, world shelter로 고안되어 난연성장비로 업데이트되었으며 200평방피트 천막의 비용은 1,450달러이다. 창문, 통풍구, 히터, 오프그리드 전원, 퇴비화장실/물저장/정화 등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림 4.2 Shelter by Buckminster Fuller, USA

시게루 반의 종이로 만든 구호천막은 동일본 대지진(2011년) 당시 피해자들의 임시거처로 사용되었다(그림 4.3 참조). 반의 구호천막은 종이가 방수와 방염에 강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임시거처에 종이칸막이를 설치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하면서도 공동의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료인 종이는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저렴해 긴급한 재난발생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매우 창의적인 건축재료가 되었다. 반은 재난대처를 위한 생태친화적 건축프로젝트를 연달아 담당하면서 국제 건축계에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Pritzker Architecture Prize)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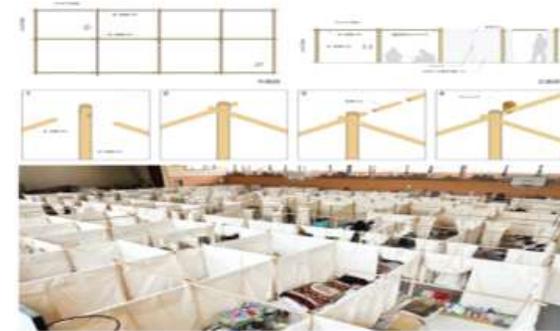


그림 4.3 Shelter by Shigeru Ban, Japan

다음은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중 의류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4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의류

개념	디자이너	이미지
<p><b>MINIM+AID kit</b> 자가충전이 가능한 충전기, 라디오, 우비, 램프, 물통, 호루라기 등으로 구성된 미니멀한 원통형으로 우산꽃이에 꽃아둘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p>	<p>Desingn Office Nendo, Japan</p>	
<p>자켓, 텐트, 침낭 겸용으로 빠르게 접고 펼 수 있으며 방수기능과 작은 곤충까지 막아줄 수 있는 방충망을 갖추었다. 봄, 여름, 가을용 아웃도어 제품이다.</p>	<p>Jakpak, USA</p>	

<p><b>Wearable Shelter</b> 전쟁 혹은 자연재난지역에서 수천 km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난민을 위해 입고 있는 의상을 텐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p>	<p>Harriet Harris, UK</p>	
--	---------------------------	---

다음은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중 식품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5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식품

개념	디자이너	이미지
<p><b>Heat Rescue</b> 쌀, 생수, 주방, 요리기구, 수건, 장갑, 200인분의 인스턴트식품과 키트 하단의 이동형 난로 및 조리기구까지 포함</p>	<p>Hikaru Imamura, Japan</p>	

<p><b>Life Sack</b> 오염된 물이 15 나노미터 필터를 거쳐 물에 있는 불순물을 여과하며 투명가방에 햇빛이 물을 추가 살균하는 원리로 작동</p>	<p>Park Jungwook Lee Myungho Lee Deayul, Korea</p>	 
<p><b>Solar Cooking System</b> 오목렌즈 역할의 반원형 조리구에 효율적으로 태양열을 집적해 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p>	<p>Vajra Foundation, Nepal</p>	 

다음은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중 컴퓨터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6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쉼터

개념	디자이너	이미지
<p><b>Softwall</b> 버려진 종이와 자석을 재활용하여 접이식 이동벽을 모티브로 사용할 수 있음</p>	<p>Molo Design Inc., Canada</p>	

		
<p><b>Emergency Cocoon Travel Shelter</b>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언제, 어디서든 나무에 걸어 사용이 가능함. 내부는 발열섬유로 구성됨</p>	<p>Vagabondsh, USA</p>	 
<p><b>Emergency Disaster Vehicle - 01</b> 물탱크와 태양광발전시설을 갖추어 물, 전기, 인터넷 지원이 가능한 컨테이너 임시주거공간임</p>	<p>Daiwa Lease Inc., Japan</p>	 

다음은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중 의류, 식품, 컴퓨터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7 구호물품 디자인 사례: 기타

개념	디자이너	이미지
<p><b>Life Box</b>                      식량, 물, 침낭, 의료품 등                      재해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담은 박스</p>	<p>Adem Onalan,                      German</p>	
<p>재난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구호물품 kit 박스 혹은 포장용기를 자르고 이어서 축구공으로 만들</p>	<p>Unplug Design,                      Korea</p>	

<p><b>Disaster Relief Toilet System</b>                      손쉬운 조립으로 변기제작이 가능하며, 텐트, 바구니로 구성되어 폐기물 또한 쉽게 버릴 수 있음</p>	<p>Rahim Bhimani,                      USA</p>	
---	--	---

### 4.3 구호물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재난을 겪으면서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재난피해자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얻었다. 재난의 규모와 심각성은 날로 커져갈 것을 예상하는 가운데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재난의 피해자들에게 가장 먼저 만나는 공공의 지원은 재난 구호물품 kit이다.

앞서서 우리나라가 재난지역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구호물품 kit에 대해 분석하고,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장은 재난피해자와 재난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난피해자를 위한 구호물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해외 선진사례에서 살펴본 구호물품 kit는 국가 또는 민간단체가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구비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보았다. 공무원 및 전문가들은 국가가 지원해야 할 물품과 개인이 구비해야 할 물품을 구분하고 있는지, 구분한다면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직접 재난피해자를 대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므로 이들의 고충이나 피해자들이 주로 토로하는 불만 등도 함께 조사하였다. 더불어 재난피해자들을 대면할 때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 4.3.1 구호물품의 지원품목과 개인구비품목

전국의 지자체에서 재난 및 방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호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었다. 또 각 구호물품 품목을 국가(또는 민간단체)가 지원해야 할지, 국민 개인이 구비하는 것이 좋을지를 물었다. 미국 FEMA의 기준에 따라 level 1, level 2, level 3으로 구분하여, 각 level에 속한 품목에 대해서 각각 (1) 지원 또는 (2) 개인구비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지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 또는 민간단체가 재난피해자를 위해 지원하는 방식이고, 개인구비는 국가의 지원이라기보다 개인이 상비 또는 구매해 구비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 가. 구호물품 LEVEL 1

Level 1에 속하는 물품 13개(물, 음식, 손전등, 라디오, 여분배터리

리, 약, 개인위생용품, 개인정보체크리스트, 휴대폰충전기, 가족긴급연락처, 여분현금, 얇은 담요, 지역지도)들 중 무엇이 지원물품과 개인구비물품에 속해야 하는지 질문하였고, 결과는 <표 4.18>과 같다.

표 4.18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과 개인구비 여부: level 1

품목	지원물품(%)	개인구비물품(%)	합계(%)
지역지도	60.87	17.39	78.26
얇은 담요	91.30	8.70	100
여분 현금	13.04	73.91	86.95
가족 긴급연락처	8.70	78.26	86.96
휴대폰 충전기	34.78	39.13	73.91
개인정보체크리스트	21.74	52.17	73.91
개인위생용품	56.52	30.43	86.95
약	52.17	39.13	91.31
여분배터리	52.17	43.48	95.65
라디오	43.48	43.48	86.96
손전등	47.83	43.48	91.31
음식	95.65	0	95.65
물	100	0	100
평균(표준편차)	52.17(29.65)	36.12(24.81)	88.29(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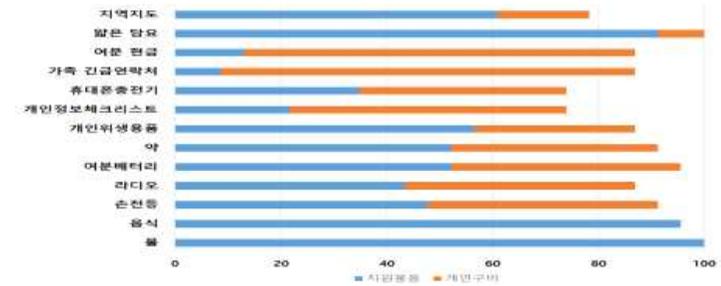


그림 4.4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과 개인구비 여부: level 1

재난과 방재를 담당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재난피해자들에 게 국가 또는 민간단체가 지원해야 할 품목으로 물(100%), 음식(95.65%), 얇은 담요(91.30%) 순으로 꼽았고, 피해자 개인이 구비해야 할 품목으로는 휴대폰충전기(78.26%), 여분 현금(73.91%)을 꼽았다. 나머지 품목은 지원과 개인구비를 선택한 비율이 50%를 미치지 못했다. 개인이 구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든, 지원물품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든 이 둘의 생각을 합한 합계 비율은 응답자가 재난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 비율로 볼 수 있다. 그 순서는 물(100%), 얇은 담요(100%), 음식(96.65%), 여분배터리(95.65%), 손전등(91.31%), 약(91.31%), 라디오(86.96%), 가족긴급연락처(86.96%), 개인위생용품(86.95%), 여분 현금(86.95%), 지역지도(78.26%), 휴대폰충전기(73.91%), 개인정보체크리스트(73.91%) 순이었다. <그림 4.6>은 그 결과를 한눈에 보이도록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 나. 구호물품 LEVEL 2

Level 2에 속하는 물품 6개(깡통따개, 자동차/집 여분열쇠, 라디오(배터리-전원 전환이 가능한 라디오), 반려동물 용품, 보드게임(어린이를 위한 물건), 유아용품)들 중 무엇이 지원물품과 개인구비 물품에 속해야 하는지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표 4.19>, <그림 4.7>과 같다.

표 4.19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과 개인구비 여부: level 2

품목	지원물품(%)	개인구비물품(%)	합계(%)
깡통따개	26.09	47.83	73.92

자동차/집 여분열쇠	4.35	91.30	95.65
라디오(배터리-전원 전환)	52.17	30.43	82.6
반려동물 용품	8.70	60.87	69.57
보드게임	21.74	47.83	69.57
유아용품	60.57	17.39	77.96
평균(표준편차)	30.43(25.5)	49.28(25.6)	79.7(1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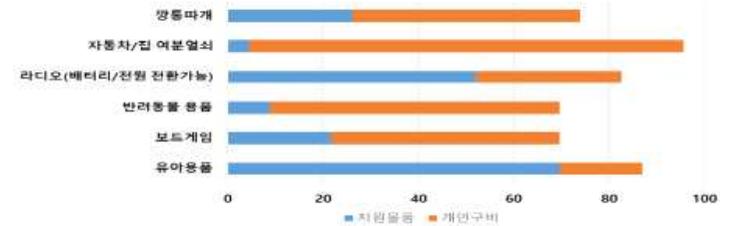


그림 4.5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과 개인구비 여부: level 2

Level 2 단계에서는, 재난 및 방재 담당자가 국가 및 민간단체의 지원품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답한 물품에 대한 비율이 level 1에 비해 낮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유아용품(69.57%)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배터리-전원 전환이 가능한 라디오(52.14)였다. 나머지 물품은 국가 및 민간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깡통따개 26.09%, 보드게임 21.74%, 반려동물 용품 8.7%, 자동차/집 여분열쇠 4.35%). 재난 및 방재 담당자가 개인이 구비해야 한다고 여기는 물품도 자동차/집 여분열쇠(95.65%)를 제외하면 level 1에 비해서는 그 비율이 낮았다. 열쇠 다음으로는 반려동물 용품(60.87%)이었다. 그러나 재난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합계=지원+개인구비) 답을 한 비율을 6개 물품 모두 약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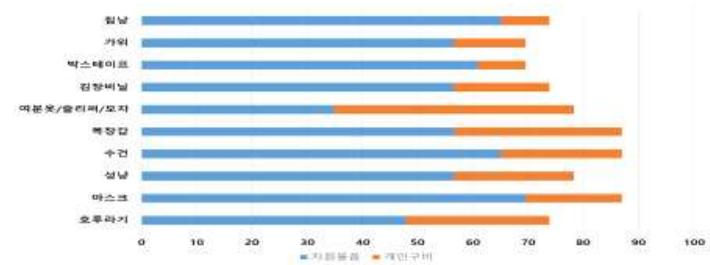
이상으로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 순서는 자동차/집 여분열쇠(95.65%), 라디오(82.6%), 유아용품(77.96%), 깡통따개(73.92%), 반려동물 용품(69.57%), 보드게임(69.57%)이다.

**다. 구호물품 LEVEL 3**

Level 3에 속하는 물품 10개(침낭, 가위, 박스테이프, 김장비닐, 여분옷/슬리퍼/모자, 목장갑, 수건, 성냥, 마스크, 호루라기)들 중 무엇이 지원물품과 개인구비물품에 속해야 하는지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표 4.20>, <그림 4.8>과 같다.

**표 4.20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과 개인구비 여부: level 3**

품목	지원물품(%)	개인구비물품(%)	합계(%)
침낭	65.22	8.7	73.92
가위	56.52	13.04	69.56
박스테이프	60.7	8.7	69.4
김장비닐	56.52	17.39	73.91
여분옷/슬리퍼/모자	34.78	43.48	78.26
목장갑	56.52	30.43	86.95
수건	65.52	30.43	95.95
성냥	56.52	21.74	78.26
마스크	69.57	17.39	86.96
호루라기	47.83	26.09	73.92
평균(표준편차)	56.96(9.93)	20.87(10.61)	77.83(6.94)



**그림 4.6 구호물품에 대한 지원과 개인구비 여부: level 3**

Level 3 단계에서는, 재난 및 방재 담당자가 국가 및 민간단체의 지원품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답한 물품에 대한 비율이 level 2에 비해 높았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물품은 마스크(69.57%)이었다. 50%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물품은 수건과 침낭(65.22%), 박스테이프(60.87%), 성냥, 목장갑, 김장비닐(56.52%)로 나타났다. 재난 및 방재 담당자가 피해자 개인이 구비해야 한다고 여기는 물품은 level 3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모든 물품에서 50% 미만으로 답을 하였다. 그러나 재난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합계=지원+개인구비) 답을 한 비율을 6개 물품 모두 약 70% 이상으로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 순서는 수건(95.95%), 마스크(86.96%), 목장갑(86.95%), 성냥(78.26%), 여분옷/슬리퍼/모자(78.26%), 침낭과 호루라기(73.92%), 김장비닐(73.91%), 가위와 박스테이프(69.57%)이다.

**라. LEVEL에 따른 지원 및 개인구비 비율**

**1) Level 별 높은 비율로 답을 한 구호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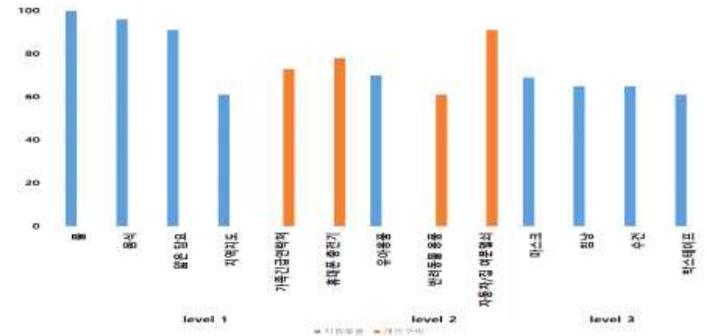
각 level에서, 국가 및 민간단체 지원이든 개인구비든 60% 이상 찬성을 표시한 품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1 지원 및 개인구비 물품으로 60% 이상 선택한 구호물품**

품목	지원물품(%)	개인구비물품(%)	합계(%)
<b>level 1</b>			
물	100		
음식	95.65		
얇은 담요	91.3		
지역지도	60.87		
가족긴급연락처		78.26	
휴대폰충전기		73.91	
평균(표준편차)	86.96(17.75)	76.09(3.08)	83.33(14.91)
<b>level 2</b>			
자동차/집 여분열쇠		91.3	
유아용품	69.57		
반려동물용품		60.87	
평균(표준편차)	69.57(-)	76.09(21.52)	73.91(15.67)
<b>level 3</b>			
마스크	69.57		
침낭	65.22		
수건	65.22		
박스테리어	60.87		
평균(표준편차)	65.22	-	
평균(표준편차)	75.36(15.67)	76.09(12.55)	75.59(14.26)

Level 1에서는 개인이 소지해야 할 것으로 개인의 연락처와 여분의 배터리를 들었고, 물과 음식, 얇은 담요는 90% 이상, 지역의 지도는 60% 가량이 정부 및 민간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Level 2에서는 개인이 소지해야 할 것으로 집/자동차 여분열쇠

(91.3%)와 반려동물용품(60.87%)을 들었고, 유아용품은 국가 및 민간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Level 3에서는 마스크, 침낭, 수건, 박스테리어를 국가 및 민간단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는데, 답을 한 비율이 60% 정도로 비슷하였다.



**그림 4.7 지원 및 개인구비 물품으로 60% 이상 선택한 구호물품**

**2) 각 Level 별 지원, 개인구비, 필수물품으로 선택한 비율**

13개 물품, Level 2에는 6개 물품, Level 3에는 10개 물품으로 총 29개 물품에 대한 재난 및 방재 담당자가 여기는 구호물품에 대한 개인구비 또는 지원물품으로 선택한 비율을 각 Level 별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가 level 별로 지원물품이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면, Level 3(56.96%), Level 1(52.17%), Level 2(30.43%)의 순이었다. Level 3과 Level 1에는 국가 및 민간단체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여

기는 물품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가 개인이 구비해야 할 물품이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면 Level 2(49.28%), Level 1(36.12%), Level 3(20.87%) 순이었다. 지원물품을 선택한 비율의 순서와는 반대로 Level 2에서 개인구비물품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가 각 level 별로 재난현장에서 필수구호물품이라고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면 Level 1(88.29%), Level 2(79.7%), level 3(77.83%)의 순이었다. 개인이 구비하든, 국가 및 민간단체가 지원하든 모든 level의 물품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목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각 level 별 지원물품, 개인구비물품, 필수물품으로 선택한 비율

level	지원물품(%) m(sd)	개인구비물품(%) m(sd)	필수물품(%) m(sd)
level 1	52.17(29.65)	36.12(24.81)	88.29(8.77)
level 2	30.43(25.5)	49.28(25.6)	79.7(10.53)
level 3	56.96(9.93)	20.87(10.61)	77.83(6.94)
평균(표준편차)	49.33(25.01)	33.58(23.03)	82.91(9.64)

<그림 4.8>을 보면 그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파란색 그래프는 지원물품을, 빨간색 그래프는 개인구비물품을 선택한 비율을 보인 것으로 각 level 별로 지원물품과 개인구비물품을 선택한 비율의 차이가 보인다. 마지막으로 초록색은 필수물품을 선택한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모든 레벨에서 80%이상으로 필수구비물품이라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순서는 level 1, level 2, level 3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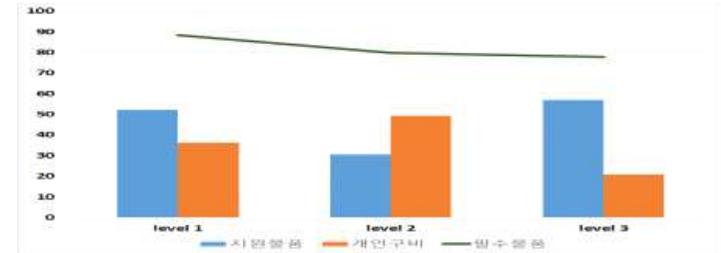


그림 4.8 각 level 별 지원물품, 개인구비물품, 필수물품으로 선택한 비율

다음 <표 4.23>은 모든 품목 29개에 대한 필수물품으로 선택한 비율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재난현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품목은 물과 얇은 담요였고, 가장 낮은 비율로 필수물품이라고 응답한 물품은 반려동물 용품, 박스테이프, 보드게임, 가위였다. 90% 이상의 비율로 필수물품이라고 응답한 물건은 모두 level 1에 속한 물품이었다. 이는 level 1에 속한 물품이 생존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물품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3 각 물품에 대한 필수물품으로 선택한 비율의 순서

순서	품목	Level	필수물품 (%)
1	물	1	100
2	얇은 담요	1	100
3	음식	1	95.65
4	여분 배터리	1	95.65
5	자동차/집 여분열쇠	2	95.65
6	손전등	1	91.3
7	약	1	91.3
8	라디오	1	87

9	개인위생용품	1	87
10	가족긴급연락처	1	87
11	유아용품	2	87
12	마스크	3	87
13	수건	3	87
14	목장갑	3	87
15	여분 현금	1	87
16	라디오(배터리-전원 전환가능)	2	82.61
17	지역지도	1	78.26
18	성냥	3	78.26
19	여분옷/슬리퍼/모자	3	78.26
20	개인정보체크리스트	1	73.91
21	휴대폰충전기	1	73.91
22	광통따개	2	73.91
23	호루라기	3	73.91
24	김장비닐	3	73.91
25	침낭	3	73.91
26	반려동물 용품	2	69.57
27	박스테이프	3	69.57
28	보드게임	2	69.57
29	가위	3	69.57
	평균(표준편차)	-	82.91(9.65)

### 3) 전체 물품에 대한 지원물품 및 개인구비물품 선택 순위

앞서 살펴본 것은 29개의 물품을 재난현장에서 얼마나 필수적으로 여겨야 할 물품인지를 조사한 데에 대한 결과였다. 다음 <표 4.24>는 29개의 물품에 대해서 얼마나 국가 및 민간단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여기는지 응답한 비율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상위에 속하는 총 3개의 물품인 물(100%)과 음식(95.65%), 얇은 담요(91.3%)는 반드시 국가 및 민간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4번째 물품부터는 약 20% 정도의 차이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4순위부터 17순위는 50~60% 비율을 유지하고, 18순

위 이후로는 선택비율이 더 떨어져 40%에서 20%까지 떨어졌다. 하위 순위로 갈수록 개인이 갖추어야 할 구비물품으로 보인다.

표 4.24 각 물품에 대한 지원물품으로 선택한 비율의 순서

순서	품목	Level	지원물품 (%)
1	물	1	100
2	음식	1	95.65
3	얇은 담요	1	91.3
4	유아용품	2	69.57
5	마스크	3	69.57
6	수건	3	65.22
7	침낭	3	65.22
8	지역지도	1	60.87
9	박스테이프	3	60.87
10	개인위생용품	1	56.52
11	성냥	3	56.52
12	목장갑	3	56.52
13	김장비닐	3	56.52
14	가위	3	56.52
15	여분배터리	1	56.52
16	약	1	52.17
17	라디오(배터리-전원 전환가능)	2	52.17
18	손전등	1	47.83
19	호루라기	3	47.83
20	라디오	1	43.78
21	휴대폰 충전기	1	34.78
22	여분옷/슬리퍼/모자	3	34.78
23	광통따개	2	26.08
24	개인정보체크리스트	1	21.74
25	보드게임	2	21.74
26	여분 현금	1	13.04
27	가족 긴급연락처	1	8.7
28	반려동물 용품	2	8.7
29	자동차/집 여분열쇠	2	4.35
	평균(표준편차)	-	49.33(25.01)

다음 <표 4.25>는 29개의 물품에 대해서 얼마나 개인이 구비해야 한다고 여기는지 응답한 비율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표 4.24>에서 보인 양상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지원물품에서는 하위 순위에 속했던 자동차/집 여분열쇠, 가족긴급연락처, 여분 현금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이전에 상위에 속했던 물, 음식은 최하위를 차지하면서 0%의 답을 얻었다.

최상위 순위에 오른 자동차/집 여분열쇠는 91.3%였고, 2순위와 3 순위는 70%대의 비율로 응답을 얻었다. 4순위이후부터는 응답의 비율이 점차 떨어지는 관찰할 수 있다.

**표 4.25 각 물품에 대한 개인구비물품으로 선택한 비율의 순서**

순서	품목	Level	개인구비 (%)
1	자동차/집 여분열쇠	2	91.3
2	가족긴급연락처	1	78.26
3	여분 현금	1	73.91
4	반려동물 용품	2	60.86
5	개인정보체크리스트	1	52.17
6	깡통따개	2	47.83
7	보드게임	2	47.83
8	여분배터리	1	43.48
9	손전등	1	43.48
10	라디오	1	43.48
11	여분옷/슬리퍼/모자	3	43.48
12	약	1	39.13
13	휴대폰충전기	1	39.13
14	개인위생용품	1	30.44
15	목장갑	3	30.44
16	라디오(배터리-전원 전환가능)	2	30.44
17	호루라기	3	26.09
18	수건	3	21.74

19	성냥	3	21.74
20	유아용품	2	17.39
21	마스크	3	17.39
22	지역지도	1	17.39
23	김장비닐	3	17.39
24	가위	3	13.04
25	얇은 담요	1	8.7
26	침낭	3	8.7
27	박스테이프	3	8.7
28	물	1	-
29	음식	1	-
	평균(표준편차)	-	33.58(23.03)

<표 4.24>과 <표 4.25>을 종합해 볼 때, 총 29개의 구호물품 목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가 및 민간단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여기는 평균 비율은 49.33%였고, 같은 물품목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인이 구비해야 한다고 여기는 비율은 33.58%였다. 이는 재난과 방재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담당자들이 보기에 각 물품들이 반드시 개인이 갖추어야 할지, 국가 및 민간단체가 지원해야 할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기타 제안 구호물품

29개 물품 이외에 대피소 등 재난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구호물품을 적어달라는 질문에 응답한 물품은 (1) 간식, (2) 취침용 눈가리개, (3) 매트리스, (4) 명찰, (5) 샤워장, (5) 세면도구, (6) 속옷, (7) 슬리퍼, (8) 신경안정제, (9) 신발, (10) 양말, (10) 옷, (11) 책, (12) 텐트, (13) 휴지 등이었다. 이는 level 1~3에서 보인 물품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재난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소통하면서 나눈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장에서 쉽

게 잠들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눈가리게 필요하다고 여겼고, 쉽게 벗고 신을 수 있는 슬리퍼, 서로의 이름을 파악하기 쉽도록 명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 등으로 나타났다.

### 4.3.2 대피소 내 구호물품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시, 대피소에서 필요한 구호물품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내용은 대피소에 비치되어야 할 구호물품과 대피소 안의 구조를 제안해달라고 질문하였다.

#### 가. 대피소 내에 필요한 구호물품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시, 대피소에 비치되어야 할 구호물품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그 답은 아래 <그림 4.9>와 같다. 우선시 되어야 할 품목으로 냉난방기(43%)를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TV 및 라디오 등 방송시설(40%)을 언급하였다. 재난은 주로 폭염, 폭우, 태풍 등 여름이나 폭설, 한파 등 겨울, 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 발생시 냉방과 난방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방송시설은 재난발생 후 경과와 이후의 피해자들 및 활동가들의 행동안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다. 이후로, 샤워시설, 정수기/제습기/공기청정기, (공중)전화기 등을 들었다. 이 중 (공중)전화기는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거나 배터리 방전으로 통화가 어려운 피해자를 배려하여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가 비치되어야 함을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개별숙소, 냉장고/취사장, 놀이방, 도서, 물, 오피수처리시설, 화장실 등을 들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물품은 도서와 놀이방으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대피소에 피난을 왔지만 안도감은 잠시일 뿐 재난피해자들은 정해진 시간동안 불안하면서도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재난 및 방재 담당자들은 응답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언급한 품목으로 보인다. 그밖에 기타 품목으로 개인 전기시설, 게임기, 러브공간, 발전기, 비상식량, 세탁실, 식량, 여벌옷, 응급약, 자기의 의견(필요한 것, 궁금한 것)을 적을 수 있는 공간, 환풍시설을 들었다. 기타 품목에서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게임기, 러브공간 등을 들 수 있겠다.

본 연구팀이 주목하는 것은 자기의 의견(필요한 것, 궁금한 것)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다. 재난피해자들은 재난으로 인해 심리적, 육체적 상처를 입었지만, 이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지난 상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이다. 해당 재난은 언제 끝나게 되는지, 앞으로 진행되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가족들이 날 찾으러 오게 되는지, 나의 소식을 누가 알고 있는지(나의 소식을 전할 방법이 있는지), 두고 온 가족(또는 만나고 싶은 가족)의 소식을 알 방법이 있는지 등 다양한 내용을 궁금해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궁금함은 누군가 올바르게 알려주지 않으면 금세 불안감으로 변하고, 그 불안감은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화와 분노로 변하게 된다. 재난 및 방재 담당자들은 재난피해자들의 근원적인 두려움인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어야 함을 알고 있는 것을 보인다.

환풍시설, 발전기, 개인 전기시설 등은 대피소에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이 각자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면서 발전기, 개인 전기시설 등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환풍시



도록 도우면서 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평소에 복용하는 약과 습관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여 그 일상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3.3 활동가의 태도

본 절은 재난 및 방재 담당자들에게 조사한 마지막 질문이다. 대피소 및 재난현장에서 활동가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현장에서 재난피해자들을 접하면서 체득하게 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활동가들이 가져야 할 필수태도, 삼가야 할 태도, 피해자가 주로 하는 말과 불평 등을 조사하였다.

#### 가. 필수 태도: 말투, 표정 및 행동

재난 및 방재 담당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활동가들이 가져야 할 가장 필수적인 태도는 ‘침착성’, ‘배려심’이다. 상처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태도에는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녹아있기 마련이다. 이 가운데 침착성이 빠진다면 배려가 지나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침착성과 배려심을 기본으로 한 활동가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1) 긍정적인 마인드, (2) 확신을 주는 말투와 행동, (3) 차분한 표정, 말투, 행동, (4) 절제된 행동, (5) 친절한 설명 등을 언급하였다.

##### 1) 긍정적인 마인드

재난피해자들은 재난 때문에 재산, 심리적 상처, 물리적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한 일만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마련이다. 우울한 사람들은 표정과 행동에서도 우울감이 묻어나온다. 이들과 함께 지내며 시간을 보내려면 활동가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동가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에는 개인적으로든 활동가 내부에서든 기분이 나아지도록 상담을 하는 것도 좋다.

##### 2) 확신을 주는 말투와 행동

재난피해자들은 모든 게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활동가들의 확신에 찬 말투는 크게 도움이 된다. 활동가들의 말에 따라 믿음과 희망을 갖게 된다. 물론 확신에 차려면 확실한 사실만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 3) 차분한 표정, 말투, 행동

너무 들떠있거나 흥분된 활동가의 태도는 재난피해자들도 덩달아 들뜨거나 흥분하게 만든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분노와 흥분이 섞일 수 있는 재난현장에서는 활동가들의 태도는 차분해야 한다.

##### 4) 절제된 행동

재난피해자들이 대피소에서 대하는 사람들은 같은 재난피해자들이거나 활동가들이다. 활동가들의 행동은 재난피해자들의 눈에 자주 띄게 된다.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재난피해자들은 활동가들의 행동에 주목한다. 따라서 활동가들의 행동은 절제되어야 한다. 감정이나 분노, 흥분하는 모습보다는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모습이 바람직하다. 활동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행동하기보다 주어진 임무 또는 규칙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수 있다.

##### 5) 친절한 설명

재난 및 방재 담당자들은 ‘친절한 설명’ 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확실하고 정확한 설명’ 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진행방향, 사고의 진전, 피해여부, 생사여부 등 재난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것은 ‘정확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얼버무리거나 대충 대답하는 것은 재난피해자들이 활동가, 더 나아가 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한 불신하게 만드는 일이다. 아직 정보를 전달받지 못 했다면 모른다고 하는 편이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이 될 수 있다.

## 나. 삼갈 태도

활동가들의 삼갈 태도로 재난 및 방재 담당자들은 (1) 고집, 권위적인 행위, 강압적 통제적 태도, 억압적인 태도, (2) 지나친 위로, (3) 지나친 취재, (4) 욕설, (5) 짜증내는 태도, (6) 비신사적인 행위, (7) 웃는 태도, (8) 특정인과의 친밀, (9) 갈팡질팡한 태도, (10) 수다 등 10가지를 언급했다.

### 1) 억압적인 태도

활동가들도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재난피해자를 돕는 일도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지치기 마련이다. 그럴 때쯤 피해자를 ‘수혜자’로 여기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강압적이거나 통제를 하려는 태도가 묻어날 수 있다. 활동가가 가지게 되는 고집, 그것이 설사 이미 정해진 규칙이고 그것을 활동가가 잘 알고 있을지라도 피해자가 이해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설명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피해자가 느끼기에 고집을 부리거나 억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재난 및 방재 담당자들은

‘권위’, ‘고집’, ‘권위적인 태도’, ‘강압적인 태도’ 등으로 설명했다.

### 2) 지나친 위로

틀에 박힌 위로와 너무 지나친 위로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 행동은 미숙한 활동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실수이다. 활동가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안됐다’ 는 말을 자주 하게 되지만 피해자들이 듣기 거북해하며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못 한 태도이다.

### 3) 지나친 취재

피해자의 사연과 거취문제 등에 너무 궁금해 하지 않아야 한다. 재난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물려들어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재난피해자를 피로하게 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4) 욕설

욕설은 언제 어디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말투이다. 활동가의 개인적인 말투라면 더더욱 고쳐야 한다.

### 5) 짜증내는 태도

재난피해자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민감하다. 활동가들의 짜증이 개인적인 문제이거나 재난현장의 규칙, 다른 활동가로 인한 짜증이더라도 피해자들은 자기에게 퍼붓는 짜증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재난피해자들이 활동가의 행동을 주목하고 있으므로 조심해서 행동해야 한다.

### 6) 비신사적인 행위

공정하지 못한 행동이 이에 속한다. 가구별로 나누어주기로 한 물품을 몇 가구를 빼고 배분했거나, 다 같이 공유하기로 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비신사적인 행위이면서 신뢰를 잃는 행동이다. 실수로 한 행동이라면 바로 수정해야 한다.

**7) 웃는 태도**

서글서글 웃는 태도는 밝은 인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웃는 태도는 자칫 재난피해자들에게 비웃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8) 특정인과의 친밀**

활동가 특정인이든, 이해관계자가 되었던 특정인과의 친밀감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재난피해자 중 일부 또는 개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거리감을 두어야 한다. 활동가의 개인적인 친밀감이나 호감은 재난피해자들이 생각하기에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갈팡질팡하는 태도**

활동가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에서 확신에 찬 태도와 말투가 있었다면 갈팡질팡하는 태도는 그 반대의 경우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재난피해자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태도로 활동가의 말투와 태도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의 으뜸이 활동가의 갈팡질팡하는 태도이다. 활동가가 모르고 있다면 ‘모른다’ 고 하면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확신에 찬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확실하지 않은 상

태에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

**10) 수다**

활동가는 해야 할 말과 할 수 있는 말을 정리해야 한다. ‘수다’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의미로, 누구와 수다를 떠는 것이든 말수가 많아지면 반드시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다. 필요 없는 정보나 개인적인 의견 등이 전달되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수다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피해자의 말**

재난 및 방재 담당자들이 보고한 재난피해자들의 말에는 피해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말과 자주하는 불평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두 가지는 <표 4.26>와 <표 4.27>과 같다. 다음은 재난현장에서 재난피해자들에게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과 불평이다.

**표 4.26 재난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주 하는 말**

번호	피해자의 말
1	불편함
2	주위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달라고 함
3	망했다.
4	내가 죽어야지
5	이제 어떻게 사나
6	도와주세요.
7	빠른 복구
8	지원금 얼마 나오나
9	OO이가 피해입었으니 지원해주세요.
10	우리도 봐주세요.

<표 4.26>에 따르면, 재난현장에서 재난피해자들은 주로 자기 하소연이나 도와달라는 의미의 말을 자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제 자기하소연과, 도움요청, 불안감해소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 ‘망했다’, ‘이제 어떻게 사나’, ‘내가 죽어야지’ 등의 말은 자포자기 심정의 하소연의 말투이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기 보다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와주세요’, ‘우리도 봐주세요’, ‘oo이가 피해입었으니 지원해주세요.’, ‘빠른 복구’, ‘지원금 얼마 나오나’ 는 도움을 요청하는 말로 상대방이 필요한 발화이다.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주위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하는 대화로 볼 수 있다.

표 4.27 재난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주 하는 불평

번호	피해자의 불평
1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피해보상
2	정부의 지원 부족
3	복구비용, 피해보상비용의 불만
4	정부의 잘못이다.
5	이것은 인재이다.
6	욕설

재난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주하는 불평으로 재난 및 방재 담당자들이 1순위로 꼽은 것은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피해보상’ 이다. 공무원, 기관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비슷한 호소와 불평을 한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불평으로는 ‘다 책임져라.’, ‘큰 것도 아닌데 우리도 해주세요.’, ‘난 피해자이니 정부(지자

체)가 다 책임져줘야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세요.’ 등이다. 2순위로 꼽은 불평은 ‘정부의 지원부족’ 이다. 이와 같은 불평으로 ‘지원이 적다.’, ‘왜 지원금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왜 지원대상이 아닌가.’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3순위로는 ‘복구비용’ 에 대한 불만을 꼽았다. 피해보상비용과 피해복구비용에 대한 불만내용이다. 4순위 이후로는 ‘정부의 잘못이다.’, ‘이것은 인재이다.’, ‘욕설’ 등을 보고했다.

재난피해자들의 불평은 모두 정부에 기대려는 마음과 그에 따른 더 큰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 5 장 심리지원의 실무 매뉴얼 작성 지침

### 5.1 매뉴얼 구성 및 운용

#### 5.1.1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10.6.8 개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10.12.7)에 근거하여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받게 되는 정신 심리적 충격을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난심리지원 매뉴얼을 개발하여 유사 시 국민들의 조기 심리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연 및 사회 재난에 대비한 재난심리지원 매뉴얼은 재난발생시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심리적 현상과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불안을 완화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될 수 있다.

#### 5.1.2 구성 및 운용

매뉴얼 구성에서 먼저 재난발생시 정부의 심리지원 활동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재난심리지원 체계를 소개하였다. 그 다음으로 재난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재난심리지원 매뉴얼을 구성하였는데,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수집단계,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단계, 본격적인 현장지원 단계, 지속지원과 연계 단계 및 평가의 5단계로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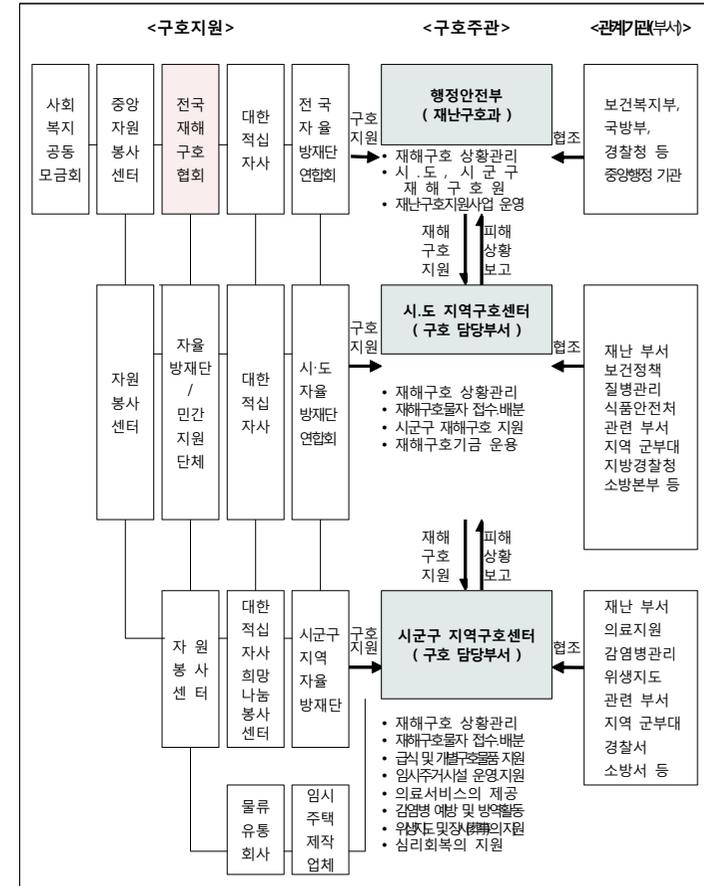


그림 5.1 재난심리지원 체계도15)

15)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매뉴얼

현장지원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심리지원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였다. 즉, 첫 접촉과 신뢰감 형성, 요구도 조사, 방문(Outreach), 상담과 교육방법 및 심리지원지침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에서 특히 취약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와 노인을 중심으로 대상자별 반응 특성과 심리지원 지침을 소개하였고, 교통사고와 화재 등 재난 유형별 심리지원 지침도 심리지원 전문가들이 활동하는데 실무지침이 되도록 하였다.

### 5.1.3 우리나라 재난심리지원 체계

우리나라는 2008년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다양한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지원이 시작되었고, 2018년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의 15개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5개 국립정신병원, 2개 재난트라우마센터, 241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재난구호활동, 고위험군 발굴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 중이며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 총괄·조정한다.

2010년 6월 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5항이 신설되어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0년 12월 7일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2항이 신설되어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제정하고 있다.

## 가. 중앙정부 차원 재난심리회복지원 여부 판단(재난발생~72시간 이내)

### 1)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를 소집

- 지원 시기, 대상 및 규모 결정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기능 조정 및 역할 분담
- 범부처 합동 재난심리회복지원 계획 수립 및 통보

### 2) 시도 및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결정 통보 전 또는 중앙차원 지원 불필요 결정시에는 중규모 재난 대처요령에 준하여 지역 재난심리회복지원 체제 가동

## 나. 재난심리회복 지원활동 전개(재난 발생 ~ 최대 60일)

### 1) 행정안전부

- 중앙심리회복지원협의회 운영, 총괄 상황관리
- 재난심리회복지원 대상 규모에 따라 인근 인력풀 파견요청
- 국립정신건강센터 “위기심리지원단” 활용

### 2) 시도 담당부서

- 현장 상담소 설치 및 물품 지원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에 재난정보 및 활동 요령 보고
- 재난심리회복지원 상황실 운영
- 소요예산 판단 및 확보(재난 발생지역 기준 해당 시도 재해구호기금 또는 재난관리기금 우선 활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경우에는 국고 추가 지원 별도 협의)

### 3)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자원봉사자 신청 활동 접수 및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재난상황 정보 전달 및 현장센터 활동 합류 교육 실시
- 희망 활동과 지역을 고려하여 상담 활동 배분
- 2차 피해(이코노미클래스 증후군 등) 예방활동 전개
- 이재민 대피생활이 장기화 될 경우 주기적인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피소 생활에 따른 전반적인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한 육체적 건강 유지 병행 지원

## 다. 상담활동 종료 및 사후 관리

### 1)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소집
- 중앙차원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지속 및 종료 여부 결정
- 재난심리회복지원 사후 관리체계 운영 및 조정
- 활동성과 분석 및 평가, 언론 홍보, 사례집 발간

### 2) 시도 담당부서

- 보건복지 부서 협조, 기존 의료체계(국립정신건강센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센터 등)를 활용한 지속적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지원

- 활동성과 분석 및 자체 평가, 행정안전부로 최종 결과 보고

### 3)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시·도의 활동 종료 통보 이후 5일 이내 의뢰자 현황, 상담종료명단, 사후관리 명단, 예산집행 실적 등을 시·도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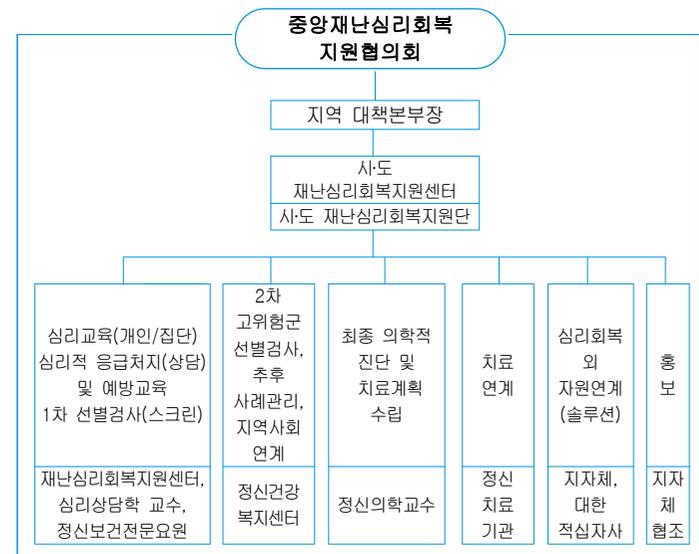


그림 5.2 대규모 재난현장 심리회복지원 활동 체계<sup>16)</sup>

16)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매뉴얼

### 5.1.4 재난심리지원 단계별 매뉴얼

#### 1단계 : 정보수집단계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시청 담당관과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안전부 및 관계 시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재난발생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li> <li>심리지원 개입시기와 방법, 범주 등을 협의한다.</li> </ul>
------------------------	--

#### 2단계 :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단계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및 대응 가능한 심리지원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의 규모, 심리지원 대상자 수 등의 기초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응 가능한 심리지원팀을 구성한다.</li> </ul>
심리지원 계획 수립 및 물품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일정, 장소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팀내 역할을 분담한다. 이때 준비물품을 점검하고 필요시 구입한다.</li> </ul>

#### 3단계 : 현장 지원 단계

심리적 충격 완화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집단예방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리지원대상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불편감을 해소시키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집단예방 교육을 실시한다.</li> <li>이때, 자연스럽게 접근함으로써 재난경험자들의 당시 경험과 심리적 불편감을 들어주고 신뢰감을 형성한다.</li> </ul>
개인상담 및 고위험군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단예방 교육 및 개별 접근을 통하여 형성된 신뢰감을 바탕으로 개인상담을 실시한다.</li> <li>상담과 동시에 대상자의 심리충격 정도를 평가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심리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선별한다.</li> </ul>

고위험군 현장 집중상담 및 추후관리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험대상자를 중심으로 현장 집중상담을 진행 한다.</li> <li>현장 집중상담 결과를 토대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li> </ul>
---------------------------	--

#### 4단계 : 지속지원 및 연계 단계

고위험군 집중상담 및 추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위험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집중상담을 진행한다.</li> <li>사고발생 후 1개월, 3개월, 9개월 및 1년을 주기로 심리적인 변화과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한다.</li> </ul>
고위험군에 대한 협력 기관 지원요청 및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상황이 종결되고 지속적인 상담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충격이 해소되지 않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보여 전문적인 정신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한다.</li> </ul>
상담기록부 작성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일지와 상담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결과를 보고한다.</li> <li>심리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현장의 요구나 불평을 취합하여 실시간으로 관계기관에 전달 보고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을 즉각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도 담당한다.</li> </ul>

#### 5단계 : 심리지원활동 평가

성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단계의 목표를 근거로 심리지원의 전 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li> <li>평가를 토대로 추후 심리지원 활동에 반영 한다</li> </ul>
-------	--

그림 5.3 재난심리지원 단계별 매뉴얼

#### 가. 정보수집단계

재난 사고 후 심리지원 대상자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시 언론 매체나 인터넷 등을 모니터링 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제보 등을 통하여 심리안정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해야한

다. 피해 범위에 해당되는 시민으로서 심리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은 지원 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지자체의 재난안전부서는 재난발생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담당 부서와 개입시기와 방법, 범주 등을 협의한다.

### 나.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단계

재난의 규모, 심리지원 대상자 수 등의 기초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응 가능한 심리 지원팀을 구성한다. 또한 지원일정, 장소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팀 내에 역할을 분담한다. 이때 준비물품을 점검하고 필요시 구입한다.

### 다. 현장지원단계

#### 1) 첫 접촉과 신뢰감 형성

재난경험자와의 첫 접촉은 재난 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전문가가 피해 현장 또는 피난소에 찾아가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첫 접촉이 늦어지면 피해자는 불안, 절망, 혼란에 빠지기 쉬운데, 가급적이면 현지 관계자와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거부감을 줄이고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1) 비밀보장하기

혼란스러운 재난 현장에서도 최대한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전에 상담 내용에 대해 비밀이 보장된다

는 사실을 알려주어 안심시키고, 면담 도중에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 장소를 이동하거나, 목소리를 낮추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상담자는 피해자나 가족들과 나눈 이야기에 대하여 그들의 동의 없이 다른 전문가(의료진, 행정지휘관 등)나 외부인(언론기관 종사자 등)에게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상담자 간에 협조를 위하여 이야기를 나눌 경우에도 상호 비밀보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2) 신체적 안전 확보

피해자가 충격으로 인하여 쇼크 반응(창백, 맥박 이상, 어지러움, 멍한 눈빛, 반응 저하 등)을 보일 경우 의료진에게 의뢰하여 즉각 처치를 받게 한다.

#### (3) 정확한 정보 제공

이 시기에 일관성 있는 정보제공이 가장 중요하다. 재난규모, 가족안부, 향후 지원 상황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정보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제공한다. 피해자들의 불안을 진정시켜 고립감을 줄이고 유언비어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소식지 형태의 유인물을 배부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핫라인 등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도움을 받도록 알려준다.

#### (4) 추가적인 외상 경험이나 자극으로부터의 보호

주변에 재난사건과 관련된 냄새, 소리, 시각적 자극이 존재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호하는 것이 좋다.

#### (5) 가족을 찾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 배려

재난 상황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이를 찾지 못한 경우, 어느 병원이나 보호소에 있는지 함께 찾아보고, 가족을 만날 때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나 동료 혹은 구호요원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한다.

### 2) 요구도 조사(Need Assessment)

재난경험자의 요구정도를 조사하고 불만과 욕구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와 함께 성별, 나이, 학력, 결혼여부 등의 일반적인 특성과 직업, 경제상태, 피해액, 건강상태, 신체적 손상 및 가족 등에 대한 자료 수집도 심리지원 전략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건충격척도, 우울증 척도, 불안척도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도 중요하다. 사망자, 기반시설 및 물질적 파괴 정도, 부상자수 등을 확인함으로써 주민들의 심리적 상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재난 상황을 파악한 후, 각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요구를 미리 파악한다.

### 3) 방문(Outreach)

방문활동은 심리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문제를 발견하며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심리지원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방문활동은 재난 경과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초기에 방문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과 중장기적으로 방문할 대상을 선별한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재산상의 손실이 큰 가족,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이웃,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등은 조기에

방문해야 할 대상이다.

### 4) 상담 및 교육

심리지원대상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불편감을 해소시키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집단 심리지원활동과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비공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생활현장에서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라. 지속지원 및 연계 단계

직접 상담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지체계와 전문가를 발굴하여 연계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중 하나이다. 일시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므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들이 장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연계시켜주어야 한다.

## 5.2 대상자별 심리지원 지침

### 5.2.1 어린이

#### 가. 필요성

어렸을 때의 부정적인 기억은 성인이 된 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데, 재난으로 인한 대혼란의 상황을 어린이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경우, 이후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 나. 어린이의 재난 반응

어린이의 반응과 심리적 충격 정도는 어린이의 발달 단계, 재난의 유형, 심각성, 노출 정도 및 사건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경과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부모의 반응이나 사건에 대한 TV나 뉴스의 경쟁적인 보도로 인하여 불필요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의 어머니, 아버지, 및 형제자매가 재난에서 희생당한 경우,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던 울타리가 무너짐을 의미한다. 이는 어린이에게 잊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이고 삶에서 가장 큰 위기이다.

어린이들은 재난의 충격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 (1) 우울, 불안, 행동 문제
- (2) 집중력, 수학 능력 및 인지 발달의 저하
- (3) 일상생활 문제 : 수면장애, 식욕상실
- (4) 공격적 행동, 틱, 분노 폭발, 위축
- (5) 복통, 두통 등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
- (6) 재난이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는 죄책감
- (7) 대소변 가리기를 못함, 자면서 땀을 흘리기, 엄지손가락 빨기, 어둠에 대한 공포, 유아어 사용 등 퇴행 행동

## 다. 어린이에 대한 심리지원 원칙

어린이들은 부모나 친지 등 성인의 감정을 감지하여 동일화하고 대처 방법을 모방하므로 어른들이 재난 상황을 적절히 통제해 감으로써 어린이들의 충격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건

에 대하여 솔직한 감정을 나누면서 어린이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침착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을 해주고 그 답이 의도했던 뜻을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계속 물어온다면 이는 알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세계가 붕괴되고 혼동되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어린이가 죄책감을 느낀다면 상황을 사실에 따라 설명해 주고 누구도, 특히 어린이가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 개개인의 관심과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에 따라 원하면 더 자주 안아 주고, 밤에는 불을 켜놓아 주고, 혼자 자지 않도록 하며, 평소 좋아하던 인형이나 담요를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말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인형놀이, 이야기하기, 글쓰기, 그림그리기, 춤추기, 음악 듣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그 외의 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어린이가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5.2.2 노인

### 가. 노인 재난심리지원의 중요성

노인은 재난발생상황에서 기동이 어렵고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는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위험한 상황에 쉽게 노출되며, 재난 후 회복 시간도 더 오래 걸린다.

혼란스러운 재난현장에서도 노인은 사기를 당하기 쉽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 나. 노인의 재난 반응

### 1) 신체적 반응

- (1) 노인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복용하던 약을 구할 수 없어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또 다른 신체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 (2)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고 취약성이 증가되어, 일반적인 건강문제(두통, 피로감, 관절통, 근육통)가 발생할 수 있다.
- (3) 스트레스와 관련된 새로운 신체적 징후가 발생할 수 있다.

### 2) 정신적 반응

- (1) 혼란상황에서 심리적 우울을 내면화시키기도 한다.
- (2) 집중력 저하 등 인지기능의 장애 및 판단력이 저하된다.
- (3) 수면장애나 악몽에 시달리기도 한다.
- (4) 재난이나 상실의 사실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숨기려고 한다.
- (5) 재난 후 복구과정에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 다. 노인에 대한 심리지원

노인은 적절한 도움이 없는 경우, 재난 후 신체 기능이 급속히 감소할 수 있다. 노인의 신체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한다. 고령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의 정도와 자립적 활동 범위를 평가하여 스스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 일상생활 활동을

을 지지해준다.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각 장애자용 특정 대중매체를 이용하고, 청각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 한다. 필요한 운송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휠체어를 타는 노인이나 기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맞춰 구조 기술과 이동방법을 지원한다. 보험회사와의 면담이나 서류 작성 등을 돕고, 사기 행각으로부터 보호한다. 정기적인 방문과 전화로 관심을 표현하고, 정서적 지지 및 특별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준다. 노인을 위한 사회 복지서비스와 연결시켜준다.

## 5.3 재난 유형별 심리지원 지침

### 5.3.1 교통사고

운전자라면 사소한 접촉 사고는 흔히 경험하는 일이지만 생명을 위협받는 심각한 교통사고는 충격적인 경험이다. 교통사고는 심각한 신체적인 후유증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하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운전 및 차에 대한 공포, 불면증, 우울증, 불안, 신체화장애 및 해리장애 등을 유발한다.

#### 가. 교통사고로 인한 반응

신체손상으로 꼼짝도 할 수 없거나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경우 생존자가 받는 심리적 충격이 실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도일 것이다. 아래는 교통사고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

여 설명하였다.

### 1) 마비, 해리 상태

교통사고가 난 직후 정신이 멍해지고 마비되는 증상이나, 자신이 있는 곳이나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자연적인 인체의 방어적 반응인데, 심한 외상적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치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 2) 불안 및 공포 반응

사고를 실감한 다음에는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하고, 또 다시 사고를 당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한다. 차만 보면 자신에게 달려드는 듯이 느껴지고, 또다시 사고가 날까 봐 차를 타지도 못하고 운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 3) 사고의 재경험

사고시나 그 후 중대한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나 재차 사고가 일어난 것같이 반복적으로 느껴진다.

### 4) 우울증

동승했던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 등에 따른 상실로 우울에 빠진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이고 염세적으로 되고 사고를 냈거나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자책하기도 한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팔이나 다리 등이 절단되어 신체적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해자나 가족, 의료진 등에게 분

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고의 책임이 자신의 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심한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책망하고 고민에 빠진다.

### 5)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술은 불쾌한 기억이나 불안은 물론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일시적 이나마 해소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고 후 음주량이 늘거나 항정신성 약물에 탐닉하기도 한다.

### 6)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교통사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요인 중 하나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생존자들의 약 9%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기 증상으로는 교통사고 장면이 계속 떠오른다거나, 사고 장면에 대한 악몽을 자주 꾸며, 멍하니 있거나 반대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사소한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등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인다.

## 나. 교통사고 경험자에 대한 심리지원

대중 버스, 열차 비행기 등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여러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사고를 당한다. 따라서 같은 지역의 주민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역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승객인 경우에는 사고 직후 즉시 이산되기 쉽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조기에 심리적 개입을 해야 하며 빨리 현장에 전문가 팀을 파견해야 한다.

교통사고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환자의 신체적 손상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사고로 인한 심리적인 충격

정도로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환자를 응급실에 이송할 때에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인데, 도착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테니 안심하라’ 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주어 안심시킨다.

가족에게 연락할 때도 급히 오다가 2차적인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천천히 오도록 주의시킨다. 환자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경우 이를 허락한다.

### 5.3.2 화재

#### 가. 화재로 인한 심리적 반응

화재는 자연재해와 달리 인위적인 가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원한 감정이 강하게 남기도 한다. 특히 건물 화재의 피해자는 주로 어린이나 노약자가 많으므로 가족이나 유족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생존자인 경우에도 장기간에 걸쳐 재활이 요구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불에 탄 시체가 흩어져 화재 현장이 극도로 비참한 경우 구조요원들의 스트레스도 매우 높다. 그리하여 화재 사건의 특성은 공포심, 절망감, 심한 손상, 혹은 극심한 상해나 죽음에 대한 위기감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화상은 거의 모든 경우에 흉터가 남아 노출되기 때문에 성형 외과적 치료나 재활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물론 흉터가 남아, 심리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우며 재산상의 손실 이외에 육체적, 정신적인

치료비도 감당이 어렵다.

#### 나. 화재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화재 피해자에게 그들의 증상이 정상적인 것이고, 특히 충격적인 사건 경험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화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로 피해자가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자신의 반응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피해자의 감정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반응은 화재사건 경험 후 흔한 반응임을 충분히 이해한다. 피해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도움을 주도록 한다. 화재를 당한 사람들은 삶의 기반의 소실로 의식주의 해결 등 구체적인 욕구에만 전념할 수 있음을 명심한다. 피해 이전의 일상생활 패턴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거나 적응하도록 돕는다.

## 5.4 재난심리지원 회복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

### 5.4.1 관계 부처와 기관의 다양화로 일관성 있는 지휘 체계 확보의 어려움

재난사고 발생시 심리지원 관계 부처는 행정안전부(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보건복지부(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부(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여성가족부(건강가정지원센터), 법무부(범죄피해자를 위한 스마일센터) 등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트라우마센터, 광주트라우마센터, 안산온마을센터 등 트라우마 전문 센터도 증가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발생시 여러 관계 부처가 협업하는 모델로 진행하

였지만, 분산된 조직 운영으로 다수의 기관이 유사한 심리지원 업무를 산발적으로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의 불만을 사기도하였고, 각 부처 산하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 간의 협업이 어려워 갈등이 유발되었음이 지적되었다.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 중심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휘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 5.4.2 재난심리지원 제공자의 전문성에 대한 상호 이해 및 합의 부재에 따른 협업의 어려움

재난발생시 공공부문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준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나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및 NGO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미약하고, 재난 정보 공유체계와 인적자원 교류가 부족하여 협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심리회복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영역은 정신건강의학,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으로서 재난심리 유관기관 및 여러 직역들이 평소 교류 부족으로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하고 학문적 배경과 견해의 차이로 협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재난현장에서는 상이한 업무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됨으로써 관계 형성이 더욱 어려워 정부 부처, 지자체 및 민간 기관들이 평상시에 정보교류와 관계형성 등 협력적인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각 영역의 전문가를 포

합하여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난심리지원 협업모델을 발전시켜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각 조직과 직능의 역할과 기능을 수립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

#### 5.4.3 재난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재난발생시 시설피해 복구지원과 이재민 긴급구호 차원을 넘어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상처까지 치유하기 위한 재난심리지원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재난피해자는 혼란스러운 재난현장에서 인지 정신기능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어 심리지원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2006년 재난심리지원센터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재난심리지원 서비스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재난발생시 물질적, 경제적 보상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심리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2016년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에서 대구 중구청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심리지원까지 포함한 포괄적 지원을 수행한 바 있다. 향후에도 재난발생시 시설피해 및 신체적 구호와 통합하여 재난피해자 중심의 one-stop 통합적 심리지원 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재해구호 협회가 지향하는 재난 이후 희망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의 중요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재난 피해자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재난의 경험을 자기발전의 계기로 전환하는 외상후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피해자와 피해 지역 공동체가 재난 이전의 일상적 삶으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재난 피해자들을 도움을 받아야 할 피동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행동의 주체로 보고, 회복력과 탄력성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지원 연구의 주요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다.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니즈와 사회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요약하였다.

첫째, 재난 피해자들의 재난이후 심리적 충격은 경제적 측면에서 피해의 복구가 어려울 때 불안과 우울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재난이후 재난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임시주거, 구호물자, 경제적 보상 등 지원과 복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연재난 이후 마을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며 외부의 지원에 대해 촉각을 세우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 봉사자와 활동과 구호물자의 지원 등이 고른 분배의 규칙의 설정과 인력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재난피해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디브리핑(debriefing)프로그램을 통해 소통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인적재난 이후 재난 피해자들을 외부와 고립되고,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로 심리적 갈등과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적 재난의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고립되지 않도록 방문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재난 피해에 대한 보상, 소송 등의 문제에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재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사항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시사점이 요약된다.

첫째,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구호물품 구성을 살펴보면 세트물품의 크기, 재질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며, 원활한 구호물품의 보급 및 지원을 위해서 재해의 특성, 피해자, 경험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재난현장에서 재해구호물품의 신속한 전달과 구호물품의 사용함에 있어서 휴대가 편하고 실용적인 제품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만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재해구호물품의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 재해구호물품의 구성은 비교적 필요한 물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물품의 색상과 디자인은 재난 피해자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현실에 대한 부적응과 우울감을 증가시켜 심리적 퇴행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해구호물품의 디자인의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구호활동가들의 국내외의 심리지원의 매뉴얼을 분석하여 재난 피해자의 대상자별, 재난유형별 심리지원 매뉴얼의 작성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 피해자들의 대상을 구분하여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대상들의 재난이후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재난 반응에 고려하여 적절한 심리적 지원과 원활한 물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어린이의 경우 특히 솔직한 감정을 나누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침착해야 하며, 노인의 경우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수반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관심의 표현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고, 복지서비스의 연결에 대한 도움을 주어야 함을 매뉴얼을 통해 제시하였다.

둘째, 재난의 유형별로 생존자 및 피해자들은 다양한 심리적 충격과 재난 반응이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교통사고의 경우 신체적 후유증의 다양한 심리적 충격을 유발하므로 조기의 심리적 개입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화재의 생존자의 경우 장시간 재화를 요하는 후유증을 남기며, 재산상 손실 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동반한다. 감정적인 반응과 고통스러운 반응을 확인하고 이해하여 피해 이전의 일상 패턴을 유지 또는 적응하도록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재난심리지원 회복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 및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심리지원의 일관성 있는 지휘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재난사고 발생시 심리지원 관계 부처의 다양화로 재난발생시 각 부처 산하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 간의 협업이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현 체계에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휘체계의 확보로 원활한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난심리지원 제공자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재난현장에서 상이한 업무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게 되어 정보공유체계와 인적자원의 교류가 부족하여 협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업모델을 발전시켜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수립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재난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들은 심리지원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며, 물질적 지원과 경제적 보상위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재난 발생시 통합적 지원을 위한 one-stop 통합적 심리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피해자, 구호활동가, 전문가들의 조사 및 해외사례를 기초로 하여 피해자들의 유형과 요구에 따른 지원, 피해자 지원에 있어 심리적 안정의 도모를 위한 개선, 심리지원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심리적 지원은 구호활동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재난 경험 이후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자료

고동환, 재난민의 삶을 배려하는 재난구조디자인, 디자인맵, 2014.

구다원,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는 세계의 ‘굿디자인’,  
[http://www.heralddesign.co.krissue\\_view.php?nowpage=1&movepage=&ud=87](http://www.heralddesign.co.krissue_view.php?nowpage=1&movepage=&ud=87), 20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유형별 대피소 통합관리 및 대피생활 지원 기술 개발, 2012.

국제이주기구, *재난시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사회적 지원에 관한 IASC 가이드라인*, pp.85, 2016.

김주환, *회복탄력성-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위즈덤하우스, 2011.

김찬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대한내과학회지*, 69(3), pp.237~240, 2005.

김태형, 이경수, 임지은, 이상열, 김기정. 국내·외 재난심리지원 체계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위기관리이론과실천*, 13(4). pp.81~93. 2017

대한불안장애학회 재난정신의학위원회, *재난과 정신건강*. 지식공작소; 서울, 2004.

대한스트레스학회. *스트레스 과학*. 한국의학, 2013.

디자인맵편집부, *생활 속의 자연재해 대처 생존물품*. 디자인맵. 2016.

박진아, 재난을 위한 디자인: 지속가능성을 넘어 회복가능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정글*, 2016.

배정이, *외상후 성장을 위한 재난심리지원 지침서*. 정담미디어, 2016.

\_\_\_\_\_, 이나윤, 박현주, *재난심리지원전문가 실무지침서*. 부산광역시 재난심리지원센터, 2010.

\_\_\_\_\_, 최남희, 임숙빈, 우종민, 윤숙희, 최은옥, 성미혜, 오진아, 이윤미. *재난경험자 심리지원 지침서*. 부산광역시 재난심리지원센터, 2009.

법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2943호) 제3조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월간디자인, 북유럽의 난민 디자인 프로젝트, *월간디자인*, 2월호, p32, 2016.

임재호, *트라우마 이해와 치료방법론*. 교육과학사, 2014.

정재동, 해외주요국의 재난관리 ICT 동향과 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한재은, 정순돌, 김고은, 재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위기개입모델 비교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7(3). pp.49~70, 2011.

행정안전부, *2017 재난심리회복지원 실무 매뉴얼*, 2017.

\_\_\_\_\_, *2018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2018.

홍윤식, 재난의학-의학적 측면에서의 재난. *대한의사협회지*, 44(6), pp.582~587, 2001.

## 2. 해외 자료

- Bernard van Leer Foundation, *Early Childhood Matters. Volume 104: Responding to young children in post-emergency situations*, 2005
- Brewin, C. R., Andrews, B., Valentine, J. D., “Meta-analysis of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rauma-exposed adult” ,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5), pp.748~766, 2000.
- Brown, S. H., Fischetti, L. F., Graham, G., Bates, J., Lancaster A. E., McDaniel, D., Gillon, J., Darbe, M., Kolodner, R. M., “Use of electronic health records in disaster response: the experience of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fter Hurricane Katrina” , *Am J Public Health*, Apr 5, 2007.
- Burns, K., North Carolina shares a model for dealing with disaster. *J Am Vet Med Assoc*, 230(7), pp.978~979. 2007.
- North, C. S., Nixon, S. J., Shariat, S., Mallonee, S., McMillen, J. C., Spitznagel, E. L., Smith, E. M., “Psychiatric Disorders Among Survivors of the Oklahoma City Bombing.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282(8), pp.755~762, 1999.
- Carrarini, J. E., “Disaster-related mental health needs of women and children” , *MCN*, 33(4). pp.242~248. 2008.

- Coping With a Traumatic Event,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5.
- Corrarino, J. E., “Disaster-Related Mental Health Needs of Women and Children” ,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33(4), pp.242~248, 2008.
- Documet, J., Liu, B. J., Documet, L., Huang, H. K., “Wireless remote control of clinical image workflow: using a PDA for off-site distribution and disaster recovery” , *J Am Coll Radiol*, 3(7), pp.520~527. 2006.
- Donahue, J., Williamson, J., *Community Mobilization to Mitigate the Impacts of HIV/AIDS. Displaced Children and Orphans Fund*. 1999
- Eisenman, D. P., Cordasco, K. M., Aschm S., Goldenm J. F., Glik, D., *Disaster planning and risk communication with vulnerable communities: lessons from Hurricane Katrina. Am J Public Health*, 2007
- Emergency Nutrition Network Online, *Infant Feeding in Emergencies*, 2006.
- Everly, G. S., Mitchel, J. T., *Integrative Crisis Intervention and Disaster Mental Health*. Ellicott City, MD: Chevron, 2008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ommonly Used Sheltering Items & Services Listing*, 2013.
- FEMA, *Ready 비상물품목록-한국어 브로슈어*, 2010.
- Galea, S., Vlahov, D., Resnick, H., Ahern, J., Susser, E., Gold, J.,

Bucuvalas, M., Kilpatrick, D., “Trends of probabl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New York City aft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58, pp.514-524. 2003.

Genev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Available in English, Arabic, French and Spanish*, 2003.

Hagen J. C., “Protecting the elderly in times of disaster: the critical need for comprehensive disaster planning and exercise design” , *Forum on Public Policy*, pp.1-7. 2007.

Heagele, T. N., Lack of evidence supporting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supply kits. *AJPH perspectives*, 100(6), 979-982. 2016.

Homeland Security & Emergency Management.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s volunteer service program following Hurricane Katrina*. 2007.

ICRC, IRC, Save the Children UK, UNICEF, UNHCR and World Vision, *Inter-Agency Guiding Principles on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Save the Children UK, 2004.

IFRC, ‘Promoting community self-help’ , in *Community-based Psychological Support: A Training Manual*, pp.57-65.

Inter-Agency Standing Committee (IASC), *IASC Guidelines on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Support in Emergency Settings*. Geneva: IASC, 2007.

Jelle, M., Grijalva-Eternod C. S., Haghparast-Bidgoli H., King, S.,

Cox, C. L., Skorkis-Worrall, J., Morrison, J., Colbourn, T., Fottrell, E., and Seal, A. J., “The REFANI-S study protocol: a non-randomised cluster controlled trial to assess the role of an unconditional cash transfer, a non-food item kit, and free piped water in reducing the risk of acute malnutrition among children aged 6-59 months living in camps for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n the Afgooye corridor, Somalia” , *BMC Public Health*, 17(632), DOI 10.1186/s12889-017-4550-y. 2017.

Joho B., S, Lozano, D., Pagella, P., Wargo, M., and Amani, H. “Burn Disaster-management planning: a preparedness tool kit” , *Journal of Burn Care and Research*, 35(4), e205-e216. 2014.

Liu, A., Tan, H., Zhou, J., Li S., Yang, T., Sun, Z., Wen, S., W., “Brief screening instru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7-15 years of age” . *Child Psychiatry Hum Dev*, 2007.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Longterm Investigation of Disaster Victims and Development of Life-friendly Relief Policy Technology*, 2017.

PAHO/WHO, ‘Sociocultural aspects’ . In: *Management of Dead Bodies in Disaster Situations*, Washington: PAHO, pp.85-106. 2004.

Pateman, H., Hughes, K., and Cahoon, S., “Humanizing humanitarian supply chains: a synthesis of key challenges” , *The Journal*

of *Shipping and Logistics*, 29(1), pp.81-102. 2013.

Perman, J., Shoaf, K., Kourouyan, A., Kelley, M., A comparison of published guidelines for household preparedness supp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s*, 29(1), pp.1-25, 2011.

Regional Psychosocial Support Initiative (REPSSI), *The Journey of Life (awareness and action workshops)*, 2006

Roccaforte, J. D., Cushman, J. G., “Disaster preparedness, triage, and surge capacity for hospital definitive care areas: optimizing outcomes when demands exceed resources”, *Anesthesiology Clinics*, 25(1), pp.161-177, 2007

SAMHSA’S National Mental Health Information Center, *Care Tips for Survivors of a Traumatic Event: What to Expect in Your Personal, Family, Work, and Financial Life*, 2003.

SAMHSA’S National Mental Health Information Center, *Disaster Counseling*. Retrieved Dec. 17, 2008.

Save the Children UK, *ECD Guidelines for Emergencies – the Balkans*, 2006.

Spiegel, P. B., Le, P., Ververs M. T., Salama, P., “Occurrence and overlap of natural disasters, complex emergencies and epidemics during the past decade (1995-2004)”. *Confl Health*, 1, pp.1-2, 2007.

Byun, S. S., Kim, D. Y., Lee, J. E., Na, J. E., Cho, S., Kim, G. H., “Rebuilding a Support System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Disasters: Lessons from USA and Japan” , *Crisisonomy*, 14(5), pp.15-34, 2018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Building your disaster supply kit, texasprepare.org*. 2013.

Thomas, M., “Disaster preparedness: factors that influence Texas’ preparation for flooding.” *Dissertation for Doctor of Philosophy, Capella University*.

Tracy, M., Galea, 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after a disaster: the role of ongoing trauma and stressors”, *Public Policy and Aging Report*, 16(2), pp.16-19, 2006.

UNESCO and IIEP, *Guidebook for Planning Education in Emergencies and Reconstruction*, 2006.

Vailancourt A. Kit management in humanitarian supply chain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18, pp.64-71. 2016.

WHO,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well-being among children in severe food shortage situations*, Geneva: WHO, 2006.

社会福祉協議会, “災害時のボランティア活動の注意事項(全社協作成平成28年4月20日)”, 2016.

北海道, 防災ボランティア活動の心構え, 最終更新 2018年4月, 2018.

日本赤十字社, “災害時のこころのケア”, 2004.

東京都福祉保健局, “災害時の「こころのケア」の手引き”, 2008.

**재난 이후 회복력 제고를 위한  
심리지원 방안 연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04088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  
TEL 02.3272.0123 FAX 02.3272.0122  
[www.relief.or.kr](http://www.relief.or.kr)